

발 간 등 록 번 호

11-1352000-001967-01

2022년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CHILD RIGHTS PROTECTION MANUAL

Chapter
01 — **아동인권의 이해 / 1**

- 1. 아동과 아동인권의 정의 4
- 2. 유엔아동권리협약 5

Chapter
02 — **아동학대의 이해 / 9**

- 1.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11
-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예시 12
- 3. 아동학대의 징후 14
- 4. 아동학대 사례 16

Chapter
03 —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 19**

- 1. 아동 친화적인 양육환경 조성 21
- 2.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 33
- 3. 아동복지시설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37
- 4.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개방성 확대 40

Chapter
04 —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등 신고의무 및 대응 / 45**

- 1. 신고의무 47
- 2.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절차 50
- 3.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58

Chapter
05 — **아동복지시설내 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 조치 / 61**

- 1.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조치 63
- 2. 아동간 폭행 등에 따른 보호조치 69

Chapter
06 — **아동복지시설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및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 73**

- 1.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75
- 2. 아동학대 발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81

● **붙임 / 85**

- 1. 관련기관별 역할 87
- 2. 관련 법령 90
-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 134
- 4.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점검·신분증 및 임명현황 보고 양식 .. 135
- 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138
- 6. 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미디어관계자 서약서 등 139
- 7. 종사자 스트레스 자가진단 141
- 8. 성인 우울 자가선별검사 142
- 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양식 145
- 10. 아동 대상 안전 및 인권 교육 결과보고 양식 146
- 11.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양식 147
- 12.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 관련 긴급전화 설치 현황 148
- 13.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155
- 14.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158
- 15. 해바라기센터 현황 167
- 16. 성폭력상담소 현황 169

대한민국 아동권리헌장

- 2016.4월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고 '16.5.2일 공포됨

아 동 권 리 헌 장

모든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또한 생명을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발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다. 부모와 사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아동의 권리를 확인하고 실현할 책임이 있다.

- ① 아동은 생명을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와 가족의 보살핌을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폭력과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③ 아동은 출신, 성별, 언어, 인종, 종교, 사회·경제적 배경, 학력, 연령, 장애 등의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④ 아동은 개인적인 생활이 부당하게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⑤ 아동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등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다.
- ⑥ 아동은 자신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 ⑦ 아동은 자유롭게 상상하고 도전하며 창의적으로 활동하고 자신의 능력과 소질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⑧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누리며 다양한 놀이와 오락,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고 즐겁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⑨ 아동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이를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2016년 5월 2일



Chapter

01

아동인권의 이해



1. 아동과 아동인권의 정의
2. 유엔아동권리협약



01 → 아동인권의 이해

☑ 아동이란 ?

- ◇ 아동은 양육과 훈육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입니다
- ◇ 아동은 잠재능력이 있고, 자신만의 관심과 욕구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 ◇ 아동은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사물을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 ◇ 아동의 견해 경험 희망은 어른들의 것과 다릅니다.
- ◇ 아동은 꾸준히 성장하는 존재입니다.

☑ 아동에게 4 가지의 기본권이 있으며,

- ◇ **생존권** : 아동은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서비스를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려야 합니다.
- ◇ **보호권** : 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와 방임, 차별, 폭력, 징집, 부당한 형사처벌, 과도한 노동, 약물과 성폭력 등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합니다.
- ◇ **발달권** : 아동은 교육을 받을 권리, 여가를 즐길 권리, 문화생활을 하고 정보를 얻을 권리, 생각·양심·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을 통해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합니다.
- ◇ **참여권** : 아동은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등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 의견을 말하고 그것을 존중 받아야 합니다.

☑ 권리수호에 있어서 3 가지 원칙이 있고,

- ◇ **아동에 대한 규정** :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입니다.
- ◇ **비차별의 원칙** : 성별, 종로, 사회적 신분, 인종, 국적, 그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아동은 차별되어서는 안 됩니다.
-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아동에 관한 활동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 그 과정은 1 가지입니다.

- ◇ **1과정** : 아동권리 실현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1 아동과 아동인권의 정의

- **아동** : 18세 미만의 사람, 권리의 주체이며, 동시에 보호가 필요한 존재임.(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유엔아동권리협약 제1조)
- **아동기** : 18세에 이르는 시기로 역량이 발달하는 시기, 어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갖는 시기, 아동기는 성인기와 분절된 개념이 아닌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으로 진화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 진화하는 능력은 아동이 그럴만한 힘이 있는 존재로 인정하므로 발전 가능성을 설명하는 개념임, 아동의 진화하는 능력은 경험, 문화, 양육자의 지지와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음.
- **아동인권** : 인권은 “인간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에서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로 정의함. 아동인권이란 아동은 존엄과 가치를 가진 인간으로 권리와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다만, 아동의 인권은 “성장하는 존재”로서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의 공유한 특성과 성장발달을 고려하여 보장해 주어야 함. 즉, 연령발달에 따른 알맞은 법적 보호와 신체적, 정신적으로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보장해 주어야 함.
- **국가의 인권책무** :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 권리의 주체이며, 국가는 개인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가진 의무이행자임.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4조에서는 당사국은 협약에 명시된 권리실현을 위해 입법, 행정적 조치를 비롯한 모든 적절한 이행조치를 취해야 하며, 당사국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자원을 동원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 국가의 인권책무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2 유엔아동권리협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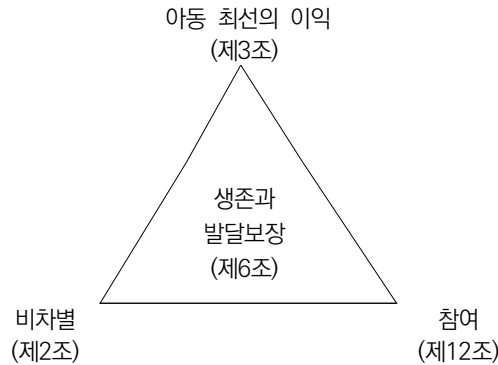
- **유엔아동권리협약** : 1989년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협약으로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상정하며,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와 발달적 특성과 관련된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함을 강조한 협약.
 - 현재 전세계 196개국(2021.12월기준)이 비준하였으며, 대한민국은 1991년 가입.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효력**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협약으로 헌법 제6조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짐.
 -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문과 3부 54개 조항으로 구성됨.
 - 제1부는 제1조 ~ 제42조이며, ‘아동의 권리’와 ‘아동권리조항의 이행 의무’를 규정.
 - 제2부는 제43조 ~ 제45조이며, ‘협약의 국제적 실시 조치로 ’국가보고제도’와 ’아동권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
 - 제3부는 제46조 ~ 제54조이며, 서명, 가입, 비준서 기탁, 개정절차, 유보, 폐기, 원본 등에 관하여 규정.

〈아동권리협약의 구성〉

분류	해당조항
1. 아동의 정의	제1조
2. 협약의 이행방법	제4조, 제42조, 제44~46조
3. 일반원칙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
4. 시민적 권리와 자유	아동권리 제7조, 제8조, 제13~16조, 제17조, 제37(a)조 제5조, 제9~11조, 제18~21조, 제25조, 제27~4조, 제39조 제28~29조, 제31조 제28~29조, 제31조 제22조, 제32조, 제34~40조
5. 가족환경과 대안적 보호	
6. 기본적 건강과 복지	
7. 교육, 여가, 문화적 활동	
8. 특별보호조치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2조, 제3조, 제6조, 제12조에 따라, 각 조항은 그 자체로 성립되는 하나의 권리아자 다른 권리를 해석, 적용하는데 고려되어야 하는 일반 원칙임.

〈삼각형 모델로 설명하는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원칙〉¹⁾



구분	내용
생명, 생존 및 발달의 원칙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은 생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아동은 특별히 생존과 발달을 위해 다양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임. 생존의 의미는 생명이 있고 이를 유지하는 생존의 개념을 포함. 발달은 아동의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문화적 발달 등 전인적인 발달을 포함하는 개념임. ☞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위생적이고 영양가 있는 식사와 간식, 아동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원, 아동이 생활하기에 쾌적한 공간과 환경, 균형적인 발달을 위한 교육과 놀이, 충분한 휴식 등을 아동에게 제공해야 함을 의미함.
비차별의 원칙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아동은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국적, 출생, 재산 등과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원칙임. 아동은 자신이나 가족이 처한 상황이나 배경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기회를 제한받는 일이 없어야 함. ☞ 아동복지시설에서는 모든 아동에게 차별 없는 대우와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함.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제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입법기관 등은 아동과 관련된 활동을 함에 있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임. ☞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원가정과 시설종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아동의 이익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아동의 이익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아동 의견 존중과 참여의 원칙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스스로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임. 의사 표현의 절차와 과정은 아동의 나이와 성숙도를 고려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에서는 규칙을 개정하거나 프로그램을 기획하거나 아동의 자립을 준비할 때 등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1) 출처 :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Training Kit』,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6 Jay Wisecarver, 『The UN CRC & Training on Children Rights』, 『유엔아동권리협약 10주년 기념 학술대회자료집』, 한국아동권리학회, 1999.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기본권**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기본권으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분류하고 있음. 이 권리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모든 권리의 가치는 동등하며, 아동의 삶에 있어 똑같이 중요하므로 모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어떤 권리도 온전히 보장할 수 없음.
 - ① ‘생존권’은 생명을 유지하고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권리’ 등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보장을 받을 권리임.
 - ② ‘보호권’은 차별로부터의 보호,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유해약물이나 환경으로부터 보호’ 등 보호를 받을 권리임.
 - ③ ‘발달권’은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정규·비정규적 교육을 포함하여 모든 교육을 받을 권리와 놀 권리, 신체적·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 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등 아동이 균형있게 성장할 권리임.
 - ④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평화로운 방법으로 모임을 자유롭게 열 수 있는 권리,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 유익한 정보를 얻을 권리 등임.

〈유엔아동권리협약 기본권 분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곳에서 살 권리 ☑ 충분한 음식을 먹을 권리 ☑ 아픈면 치료받을 권리 ☑ 기본적인 생활을 할 권리 ☑ 사회보장혜택을 받을 권리 <p style="text-align: center;">생존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유해한 약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 응급상황에서 보호받을 권리 <p style="text-align: center;">보호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받을 권리 ☑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질 권리 ☑ 놀이와 여가를 즐길 권리 ☑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p style="text-align: center;">발달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를 접할 권리 ☑ 의견을 표현할 권리 ☑ 모임을 만들 권리 ☑ 집회결사의 권리 <p style="text-align: center;">참여권</p>

2) 서울특별시 아동인권전문가 가이드북 참고

☞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버전 한국어판)

-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어판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아동버전 영문판을 한국어로 번역한 후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아동의 정의, 아동의 권리 국가의 책임 등을 설명하고 있음.
- 제2조 모든 아동은 누구라도, 어디에 살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생각을 하든, 어떻게 생겼든, 남자든 여자든, 장애가 있든 없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그리고 부모나 가족이 어떤 사람이든, 부모나 가족이 무엇을 믿거나 무슨 일을 하든 이 모든 권리를 가집니다.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 제3조 어른은 자신의 결정이 아동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에게 최선이 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국가는 부모나 필요한 경우 다른 사람이 아동을 보호하고 돌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과 기관이 일을 잘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6조 아동은 생존권이 있습니다. 국가는 아동이 최선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제12조 아동은 아동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은 아동의 의견을 잘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 제19조 국가는 보호자의 폭력, 학대, 방치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
- 제31조 모든 아동은 편안하게 쉬고 재미있게 놀고 문화활동과 창작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아동의 모든 권리는 서로 관련있고 똑같이 다 중요하며, 아동에게서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아동버전 한국어판
바로가기





Chapter

02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예시
3. 아동학대의 징후
4. 아동학대 사례

02 → 아동학대의 이해

1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범죄의 정의

- **아동** : 만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조 제1호, 국제연합 아동권리협약 제1조)
- **보호자** :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
 - ※ 아동복지시설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사 등 관계자는 보호자에 해당
- **아동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 아동복지시설 내 발생한 아동학대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에 의한 학대를 말함.
- **아동학대범죄**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 형법에 의한 죄 :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 아동복지법에 의한 죄 :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 아동학대살해·치사,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
 - ※ 아동학대 행위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함으로써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보다 좁은 개념임.
- **피해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함.(아동복지법 제3조제8호)
 - ※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이 학대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아동에 국한되지 않도록 유의

- **아동학대행위자** :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
 - 따라서 아동학대범죄를 직접 범한사람 뿐만 아니라 그를 교사 또는 방조한 사람도 아동학대범죄처벌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됨.
 - ※ 방조의 예: 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등

2 아동학대의 유형 및 예시

☑ 세계보건기구는 아동학대를 '아동의 보호자와 신뢰 관계인에 의해서 아동의 건강·생존·발달·존엄성 등에 실제적·잠재적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서적 가혹행위, 성폭력, 방임, 방치 및 상업적 또는 그 밖의 착취행위'로 정의

- 신체적 학대, 감정·정서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및 착취행위의 5가지 유형 제시

- **신체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움켜잡음, 아동 던짐, 몸을 거꾸로 매달, 물에 빠뜨림 등)
- **정서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
 - 언어 폭력 행위(소리 지름, 무시 또는 모욕, 원망·거부·적대·경멸적 언어폭력, 아동에게 시설에서 내보내겠다고 위협하는 행위 등)

- 정서적 위협(공포분위기 조성, 좁은 공간에 혼자 가둬둠, 집 밖으로 쫓아냄, 미성년자 출입 금지 업소에 지속적으로 아동들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가정폭력에 노출 시킴, 잠을 재우지 않거나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행위(돈을 벌여오라며 위협, 아동 나이에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과업이나 행동 요구 등)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편애·왕따 시키는 행위 등
- **성적 학대**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보여주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성기/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등
- **방임 및 유기**
 - **방임** : 보호자가 아동에게 반복적인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 물리적·교육적·의료적 방임 등이 있음.
 - **(물리적 방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상해와 위협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는 행위,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보호자가 아동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학교 준비물을 챙겨주지 않는 행위, 특별한 교육적 욕구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
 - ※ 무단결석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5조제1항)
 - **(의료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 행위, 장애 아동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 등
 - **유기** :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방임에 포함)

3 아동학대의 징후

● 아동학대 징후는 신체적 징후와 행동적 징후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의 신체적·행동적 징후〉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p>【신체학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 비슷한 크기의 반복적으로 긁힌 상처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화음부에 있는 화상자국, 알고 있는 물체모양(다리미 등)의 화상자국, 회복속도가 다양한 화상자국 • 입, 입술, 치은, 눈, 외음부 상처 • 긁히거나 물린 자국에 의한 상처 • 손목이나 발목에 긁힌 상처, 영유아에게 발견된 붉게 긁힌 상처 • 성인에 의해 물린 상처 • 겨드랑이, 팔뚝 안쪽,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 대뇌 출혈, 망막출혈, 양쪽 안구 손상, 머리카락이 뜯겨 나간 두피 혈종 등을 동반한 복잡한 두부 손상 • 고막 천공이나 귓불이 찢겨진 상처와 같은 귀 손상 • 골격계 손상, 시간차가 있는 골절, 치유 단계가 다른 여러 부위의 골절, 복합 및 나선형 골절, 척추 손상(특히, 여러 군데의 골절), 영·유아의 긴 뼈에서 나타나는 간단 골절, 회전상 골절, 걷지 못하는 아이에게서 나타나는 대퇴골절, 골막하 출혈의 방사선 사진, 골단 분리, 골막 변형, 골막 석회화 • 간혈종, 간열상, 십이지장 천공, 궤양 등과 같은 복부손상 • 폐 좌상, 기흉, 흉막삼출과 같은 흉부손상 	<p>【신체학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
<p>【정서학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 신체발달저하 	<p>【정서학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물건을 계속 밟고 있거나 물어뜯음 • 행동장애(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신경성 기질 장애(놀이장애) • 정신신경성 반응(히스테리, 강박, 공포)

신체적 징후	행동적 징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장애 극단행동, 과잉행동, 자살시도 실수에 대한 과잉 반응 부모와의 접촉에 대한 두려움
【성학대】	【성학대】
<p>① 신체적 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령 전 아동의 성병 감염 임신 <p>② 생식기의 증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질에 생긴 상처나 굵힌 자국 질의 홍진(紅疹) 배뇨곤란 요도염 생식기의 대상포진 <p>③ 항문 증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문 괄약근의 손상 항문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항문 내장이 짧아지거나 뒤집힘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항문이 좁아짐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변비 대변에 혈액이 나옴 <p>④ 구강 증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천장의 손상 인두(咽喉)임질(pharyngeal gonorrhoea) 	<p>① 성적(性的) 행동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들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p>② 비(非)성적인 행동지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축, 환상,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자기 파괴적 또는 위험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 충동성, 산만함 및 주의집중장애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또는 외톨이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방화/동물에게 잔혹함(주로 남아의 특징) 비행, 가출 약물 및 알콜 남용 자기 파괴적 행동(자살시도) 범죄행위 우울, 불안, 사회관계의 단절 수면장애 유뇨증/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거식증) 야뇨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저조한 학업수행
【방 입】	【방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지연 및 성장장애 비위생적인 신체상태 예방접종과 의학적 치료 불이행으로 인한 건강상태 불량 아동에게 악취가 지속적으로 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침 비행 또는 도벽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집에 늦게 귀가함 지속적인 피로 또는 불안정감 호소 수업 중 조는 태도 잡은 결석

4 아동학대 사례

(가) 법원판결

- **사회복지사가 장난감 블록으로 머리를 때린 사례**
 -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던 사회복지사가 피해아동(4세)의 머리를 장난감 블록 모서리로 1회 때려 전치 1주의 두피열상을 가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로 처벌.
- **사회복지사가 아동들에게 실내화를 던지는 등 행동한 사례**
 - 아동복지시설 사회복지사가 아동들(4세~12세)을 상대로 실내화를 던지거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흔들거나, 40분간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신체·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
- **안아 달라고 우는데도 보육교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1세)이 앞에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양손을 들고 안아 달라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아동의 양손을 잡고 반대방향으로 돌려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
- **보육교사가 아동에게 혼자 중식과 간식을 먹도록 한 사례**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4세)에게 오전 간식, 중식, 오후 간식을 다른 원생들과 먹도록 하지 않고 의자 없이 바닥에 앉아서 사용하는 조그만 책상에서 혼자 먹도록 한 데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
- **보육교사가 아동의 소변에 젖은 하의로 아동의 얼굴을 닦은 사례**
 -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피해아동(4세)이 용변 실수를 하자, 다른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하의를 갈아입히고, 피해아동이 계속 울자 소변에 젖은 하의로 피해아동의 얼굴을 닦는데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

● **생활복지사가 아동들을 때리고 폭언한 사례**

- 아동복지시설 생활복지사가 피해아동들(9세~10세)을 주먹과 손바닥 등으로 때리고 “깡패성깔 나온다”, “칼로 죽여 버릴 수도 없고”, “부모님에게 말하면 작살난다”와 같은 말로 폭언한 데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

●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을 왕따로 지목한 사례**

- 초등학교 교사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들인 피해아동들(7세)이 과제를 하지 않는 등의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왕따로 지목하여 다른 친구들과 대화를 하거나 어울려 놀지 못하게 한 데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로 처벌.

● **고등학교 교사가 아동에게 피임 방법에 대해 물은 사례**

- 고등학교 교사가 야간자율학습시간에 피해아동이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공부를 안 할 것이냐, 그러면 가정책을 펴서 피임에 대해 공부를 해라, 피임률이 90%가 넘는 도구를 아느냐” 등의 질문을 한 데 대하여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로 처벌.

(나) 조사 및 판단

● **원장이 음주를 권유한 사례**

- 아동양육시설의 원장이 피해아동(17세)에게 술을 마실 것을 권하여 밤 11시경부터 다음날 아침 6시경까지 피해아동과 술을 나누어 마심으로써 피해아동이 과음으로 인하여 토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느끼고, 숙취로 인하여 당일 등교하지 못하게 만든 데 대하여 **방임**으로 판단.

● **부팀장과 생활지도원이 폭언과 욕설, 폭행을 한 사례**

- 아동양육시설의 부팀장이 피해아동들에게 식사 시간에 “빨리 처먹어라”, “장애 있냐” 등 폭언과 욕설을 하고, 생활지도원은 피해아동들에게 손날이나 손바닥으로 뒷목을 세게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한 데 대하여 **신체·정서적 학대**로 판단.



Chapter

03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1. 아동 친화적인 양육환경 조성
2.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
3. 아동복지시설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4.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개방성 확대



03 →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1 아동 친화적인 양육환경 조성

(가) 긍정양육 129 원칙 준수

- **긍정 양육 129원칙** :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부모와 자녀 간 상호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육 방법으로 아동 존중에 기반한 더 나은 양육방법 실천을 위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제아동인권센터,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 관련 전문가와 함께 ‘긍정 양육 129원칙’을 마련(2021)
- ✓ 종사자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보호하고 충족할 책임이 있는 아동권리 ‘의무이행자’로서, 아동 양육(보호)시 본 원칙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긍정 양육 기본전제** : 자녀(아동)는 존중받아야 할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설명〉

- 자녀(아동)는 부모(보호자)의 소유물이 아닌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 부모(보호자)는 자녀(아동) 대신 생각을 해주거나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아동)가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 자녀(아동)가 진정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펴보고, 생각과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 존중 받으며 자란 아이가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 긍정 양육 실천원리 2가지

- ① 부모(보호자)와 자녀(아동)가 서로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설명〉

- 부모(보호자)와 자녀(아동)의 관계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 자녀(아동)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 부모(보호자)는 자녀(아동)를 항상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조건 없는 수용은 자녀(아동)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어려운 일에 부딪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극복하려 하는 적극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② 부모(보호자) 자신과 자녀(아동)의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설명〉

- 부모(보호자)는 부모(보호자)이기 전에 고유한 인간입니다. 한 인간이 가진 개성, 장점, 단점이 부모가 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보호자)가 가진 고유한 특성은 양육에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 자녀(아동) 또한 개성, 장점, 단점을 가진 존엄하고 고유한 인격체입니다.
- 자녀(아동)가 가진 특성을 부모(보호자)가 선택할 수 없고,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녀(아동)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수는 있습니다.
- 부모(보호자)와 자녀(아동) 관계란 고유한 특성을 가진 두 인격체가 만나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기나긴 여정입니다.

● 긍정 양육 실천방법 9가지

- ① **[자녀(아동) 알기]** 아이들은 저마다 기질과 성격이 다르고, 발달특성도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아동)를 잘 살펴봐주세요.

〈설명〉

- 자녀(아동)마다 기질과 성격,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등은 다릅니다.
- 자녀(아동) 각자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동의 발달 특성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내 자녀(아동)의 발달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잘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 ② **[나 돌아보기]** 부모(보호자)로서의 나 자신은 어떤 특성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돌아켜보세요.

〈설명〉

- 부모(보호자)는 자신의 양육 태도와 방법이 자녀(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양육태도 뿐 아니라 부모(보호자) 자신의 감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③ **[관점 바꾸기]** 내 자녀(아동)의 ‘문제’ 행동이라 생각한 것이 정말 고쳐야 할 행동인지 관점을 바꾸어보세요.

〈설명〉

- 아동이 성장 과정에서 실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를 잘못된 행동(또는 문제행동)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 자녀(아동)가 보내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동은 관심 받고 사랑받기 위해 어른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할 때가 있고 그 행동이 어른의 시각에서는 문제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 무엇보다 먼저 자녀(아동)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유와 자녀(아동)가 어떤 감정과 기분이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아동)의 단점을 지적하고 실수를 비난하기보다는 자녀(아동)가 잘 한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 실수의 결과보다는 과정에 관심을 갖고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 **[같이 성장하기]** 부모(보호자)로서의 내 역할을 자녀(아동)의 성장에 맞추어 변화시켜주세요.

〈설명〉

- 부모(보호자)가 바뀌어야 자녀(아동)가 바뀌며, 자녀(아동)가 성장하는 것처럼 부모(보호자)도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고등학생 등 자녀(아동)의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행동 특성은 다릅니다. 자녀(아동)의 성장에 따라 부모(보호자)의 역할과 양육 방법, 의사소통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부모(보호자)도 계속 공부를 해야 하며, 지역 사회의 교육·보육 기관 등의 부모(보호자)교육 과정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⑤ **[온전히 집중하기]** 자녀(아동)와 보내는 시간에는 온전히 자녀(아동)에게만 집중해주세요.

〈설명〉

- 자녀(아동)가 부모(보호자)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자녀(아동)와 함께하는 동안은 온전히 자녀(아동)에게 집중해주세요.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많이 해주세요.

⑥ **[경청하고 공감하기]** 자녀(아동)의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들어주고 자녀(아동)의 감정에 공감해주세요.

〈설명〉

- 자녀(아동)와 감정을 나누는 대화는 중요합니다. 자녀(아동)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 스스로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아이의 감정에 공감해 주세요. 부모(보호자)의 공감은 아이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주어, 아이가 건강하게 발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⑦ **[일관성 유지하기]** 자녀(아동)가 동의할 수 있는 약속과 규칙을 정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대해주세요.

〈설명〉

- 약속과 규칙은 자녀(아동)와 함께 논의하여 정해주세요. 규칙은 자녀(아동)에게만 지킬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며, 부모(보호자)도 함께 지켜야함을 기억해주세요.
- 부모(보호자)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른 일관성 없는 태도는 자녀(아동)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 너무 많은 규칙보다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등 중요한 몇 가지로만 함께 정하세요. 자녀(아동)가 성장하면서 규칙이 변경되어야 할 때는 흐지부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왜 없애는지, 변화되는 상황은 무엇인지, 자녀(아동)와 함께 논의해야 자녀(아동)가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 자녀(아동) 양육에 있어서 부모(보호자)의 일관된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⑧ [실수 인정하기] 부모(보호자)도 때로는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주세요.

〈설명〉

- 부모(보호자)도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무안함이나 머쓱함을 감추려고 변명(거짓말)하거나 얼버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실수나 모르는 것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고 필요하다면 사과하세요.
- 자녀(아동)는 부모(보호자)도 모를 수 있고, 실수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⑨ [함께 키우기] 양육은 부모(보호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설명〉

- 아이를 키우는 것은 부모(보호자) 혼자서 아닌, 주변 사람과 양육 전문가, 육아지원 전문기관 등과 함께 하는 것이 순조롭습니다.
- 부모(보호자) 혼자서 양육을 책임지려 한다면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자녀(아동)에게 향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보호자)가 자녀(아동)를 부적절하게 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약 부모(보호자)의 행동이 자녀(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으로 이어진다면 자녀(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양육하기 어려울 때는 온,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나)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권보호 역량 강화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보호·실현하는 의무이행자로서 역할과 책무성을 가짐.

- 종사자가 시설아동에 대한 심리적 이해, 아동 발달과 인권보호 관련 역량 확보 필요.
-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참고, 시설의 인권상황 점검, 개선점 보완 노력
- 시·도 및 시·군·구는 교육훈련 여비 등을 사업예산에 확보하여 차질 없도록 지도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시설장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 또는 시·군·구는 거쳐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에 제출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6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 교육 내용에 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함.
 - 수준 높은 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인권센터, 여성가족부 등 전문강사 적극 활용.
 - 강사 섭외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작한 교육교재(동영상)를 활용하여 기관여건에 맞게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으로 실시.
 - ※ 집합교육자료(교육자료를 활용한 기관 내 자체교육)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게시 동영상 활용.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300만원 이내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
- **(인권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아동)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함(사회복지사업법 제4조).
 - 종사자는 아동의 권리 보호자로서 인권과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아동의 인권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예방에 노력해야 함.
 - 시설장은 아동의 학대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모든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아동대상 인권교육과 별개로 이루어져야 함(사회복지시설평가).
 - 인권교육자료 제공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인권교육센터)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시설평가) 운영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기관별 바로가기 QR코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경기도 지식(GSEEK) www.gseek.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lms.educare.or.kr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 성희롱 예방교육

경기도 지식(GSEEK) www.gseek.kr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sll.seoul.go.kr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www.kigepe.or.kr
			

-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교육

경기도 지식(GSEEK) www.gseek.kr	나라배움터 e-learning.nhi.go.kr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edue.kohi.or.kr
			

(다) 아동대상 인권 및 안전교육 실시

● **교육 대상** :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전체

● **교육 내용**

- (인권교육) 시설장은 아동이 자신의 인권이 무엇인지 알고 아동 스스로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를 위하여 아동에게 권리를 알게 하는 교육 실시 하고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모색.

※ 아동의 일반적 권리, 권리보장 및 실현을 위한 노력, 권리 침해 시 호소경로 장치 등 아동의 권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시해서 문서화해야 하며, 아동 인권규정은 아동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문서로 전달하여 아동인권보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하고, 아동시설 내에서 인권침해 사실이 발생한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 호소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통보.

- (안전교육) 시설장은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감염병 및 약물의 오용·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재난대비 안전대비, 교통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31조).

※ 아동대상 약물의 오남용 예방 교육 시 흡연예방, ADHD 약물오남용 방지 교육 함께 실시.

※ 시설장은 시설보호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아동 안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교육 생략 가능.(재학(재원)증명서로 증명)

● **교육 방법**

- 시설장은 아동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교육계획 및 교육 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교육은 아동인권·안전 등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한 종사자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법무부, 여성가족부 등 '전문강사'가 실시하도록 함.

※ 인권교육기관: 국가인권위원회,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 **지자체 행정 사항**

- 시·도 또는 시·군·구는 매년 1회 이상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교육 내용 등을 점검하고, 내실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시설장이 '아동복지법' 제31조에 의한 교육을 미실시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75조제3항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함.(최대 300만원 이내)

▣ (참고) 인권관련 교육 및 자료

- 국제아동인권센터, 유니세프 등에서 아동인권교육, 자료 등 제공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edu.humanrights.go.kr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 library.humanrights.go.kr
	

▣ (참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여성가족부)

- (목적) 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취약한 일반국민들에게 ‘찾아가는 교육’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력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 개선, 공감대 확산 도모
 - *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성매매·디지털 성범죄 등 예방교육 지원
- (교육대상) 폭력예방교육 비의무대상 일반국민, 아동복지시설 등
- (교육진행) 10명 이상 ~ 100명 이하, 1시간
 - * 전국 17개 시·도별 지역지원기관(18개소)으로 문의 후 신청시 전문강사 연계
- (교육신청) 대표번호 1661-6005 / 온라인 shp.mogef.go.kr
- (체계) 전국 17개 시·도 와 공동으로 추진 (지역 폭력예방교육 지원기관 18개소)



(라) 아동 친화적 발달환경 제공

- 지역 내 청소년 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지역 내 미술관·박물관, 대학 등과 연계해 아동복지시설 아동에 대한 취미·여가 프로그램 연계, 아동에 대해 과학·음악, 체육, 문화, 캠핑 활동 등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
 - ※ 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네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아동복지시설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시설 아동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MOU 체결 및 지원, 서비스 연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아동복지시설은 동아리 운영 활성화, 축구·농구 등 집단 스포츠 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아동들이 건전하게 집단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들이 보다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집단 생활시설 형태의 운영에서 벗어나 ‘소속사 형태’로 전환·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되, 15세 이상 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1인실 제공 적극 지원
- 아동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 단계부터 아동 발달단계에 따른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운영(체험형 경제교육 프로그램 확충, 진로 체험 활성화 및 전문 기술 교육 기회 제공 확대 등)
 - ※ 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자립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재정적 지원과 청소년직업체험센터, 대학, 고용지원센터, 기업 등 지역 사회 자원과 연계를 지원하여야 함.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주기적으로 상담을 통해 개별아동의 생활실태, 적응상태 등에 대해 파악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아동복지시설 입소 초기 아동의 경우 시·도 또는 시·군·구 및 아동복지시설의 담당자는 입소 후 1개월간 집중적 관리 기간으로 설정하여, 주기적 상담과 아동의 적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보호조치 후 1개월 내 점검 및 분기별 아동복지시설에서의 적응여부 등 추가 점검
 - 아동양육시설의 장 등은 학대 아동에 대해 보호조치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그 아동이 육체적·정신적으로 정상생활을 할 수 있을 때까지 특별지도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아동과 분리된 별도의 거주공간을 제공할 수 있음.
- 아동일시보호시설 및 아동보호치료시설의 입소아동은 학교 전학 또는 통학이 어려운 경우 학습권 침해가 우려되므로 시설장은 입소아동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 연계, 위탁교육 등 아동에 대한 학습연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마) 종사자의 인권보호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이용자(아동 등)의 부당한 요구, 폭언, 인격모독 등으로 인한 종사자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종사자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 종사자가 업무수행 과정 중 이용자로부터 경험하는 폭력피해 예방, 대응 및 사후관리 지원
 -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서비스의 범위를 고지하고 종사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서비스 등의 요구는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 또는 교육 실시
 - ※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피해 예방 매뉴얼 등 참고
- 종사자에 대한 업무 방해시 형법상 제314조(업무방해)를 적용하여 처벌 가능
-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 지원
 - 보육사 등 아동을 돌보는 사람의 스트레스는 심리적 부적응과 역할수행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심한 경우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어서,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 관리는 반드시 필요.
 - 시·군·구는 지역 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연1회 이상 찾아가는 방문 상담 및 교육 등 종사자에 대한 스트레스 측정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시설장은 ‘자가 스트레스 진단 및 관리 방법’을 종사자에게 알리고, 적극 활용. (‘붙임 8’ 참조)
 - ※ 국가건강정보포털,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자료 활용, 본인의 스트레스 정도 측정 가능.
 - ※ 직무스트레스 상담기관(근로자건강센터 1577·1588-6497, 한국건강관리협회 02-2060-2000, 정신건강복지센터 1577-0199)과 연계하여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지속적인 스트레스 관리 체계 구축.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마음건강검진 지원사업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2022년 신규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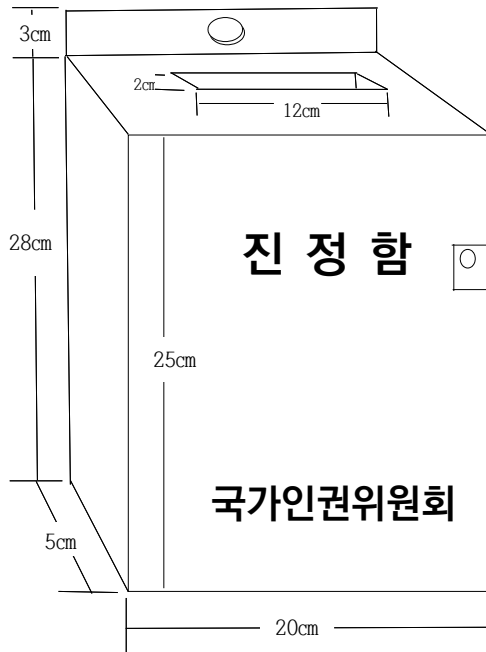
- (목적) 코로나19 지속, 직무 스트레스 등에 따른 종사자의 심리·정서적 어려움 발견, 회복 지원
- (대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2,500여명 예정
- (지원내용) 종사자 마음건강검진(온라인), 개인별 분석결과 제공 및 고위험군 관리
 - 마음건강검진(온라인) : 전문기관과 연계한 진단, 개인별 분석결과 제공
 - * 검사항목 : 마음건강(우울, 불안, 수면, 스트레스, 회복탄력 등), 신체건강(식습관, 음주 등), 직장건강(직무스트레스, 번아웃, 워라벨, 이직요인, 생산성 등), 기타, 영역별 분석하여 맞춤형 솔루션 제공
 - 고위험군 대상자에게 전화상담, 진료기관 등 안내
- (신청방법) 아동권리보장원 사업 공지 → 신청 접수·선정 → 온라인검진 → 결과확인

(바) 아동 진정권 보장

- (근거) 국가인권위원회법
-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진정권을 보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 제공(법 제31조)
 - 시설장은 아동을 최초로 보호하는 때에는 인권침해 사실을 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고지.
 - 인권침해에 관하여 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서를 시설 아동이 상시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
 - 아동이 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직원 앞에서 진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등은 즉시 그 뜻을 위원회에 통지.
- 시설장은 시설안의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를 비치(국가위원회법 시행령 제7조).
 - (규격) 진정함의 규격은 최소 기본 규격으로 하되, 설치 장소, 위치 등 여건에 따라 최소 기본규격의 1/3 범위 내에서 크게 할 수 있음.
 - (재질) 진정함은 내용물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의 재질로 제작하여야 함. 원색 사용을 제한하고, 특이한 모양 제작을 금지하여 진정함이 장식용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설치장소) 진정함은 시설 아동 누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접근이 자유로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함. 단, 표면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진정함’이라는 단어를 표기하여 다른 용도의 민원함(또는 건의함)과 구별하여 운용하여야 함.
 - (진정안내문) 설치된 진정함의 상단 또는 좌우에는 진정 안내문을 부착하여 시설 아동이 진정함 설치 취지와 운용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안내문의 내용은 붙임 6을 참조하되, 아동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정도의 글씨 크기로 작성.
 - (잠금장치 및 관리) 진정함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그 관리 책임자를 두어, 매일 일정 시간에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시설 아동이 위원회에 제출할 목적으로 작성한 진정서 또는 서면이 들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송부

- (진정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 진정함이 설치된 곳에는 진정서 양식이나 일반 용지 및 필기도구를 비치하여야 함,
 - (진정함 설치 통보) 시설장은 진정함이 설치된 장소를 통보할 때에는 진정함, 안내문, 진정용지·필기도구 및 봉합용 봉투가 나타난 사진을 동봉하여 통보하여야 함.
- 종사자 등은 위원회 명의의 서신을 개봉한 결과 당해 서신이 위원회가 진정인인 시설 아동에게 발송한 서신임이 확인된 때에는 위원회가 열람금지를 요청한 특정서면의 경우 열람 금지.

※ 참고: 진정함의 규격



2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서비스 제공

(가) 아동보호서비스 기본원칙 준수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아동복지법 제2조제3항): 아동보호 전 과정에 걸쳐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
- **원가정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 : 아동의 경우 대부분 원가정 안에서 성장할 때 아동의 이익이 가장 잘 충족될 수 있으므로 원가정 보전을 위한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아동을 가족의 보호로부터 분리할 때는 가능하다면 일시적이고 최소한의 기간에 한해야 하며, 분리결정은 주기적으로 다시 검토.
 - ※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아동이 조속히 원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
-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활성화** :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 및 보호자가 상담, 아동보호 계획 수립 및 보호 등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후 보호자와 연락이 단절되지 않도록 주의.
 - ※ 다만, 아동복지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됨
- **예방적 접근(통합적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 정보, 의무교육 미취학 및 장기결석 자료 등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기 아동을 사전 발굴·예방할 수 있도록 상시적 발굴·예방 체계 구축.(e아동행복지원시스템, '18. 3월)
- **수요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 : 아동을 보호조치하는 경우 가족과의 접촉 및 재결합 가능성을 촉진하고 아동의 생활에 대한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아동이 살아온 가정에서 최대한 가까운 환경에서 보호.
 - 시·군·구는 아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자라도록 하고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기본이념으로 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제2조) 취지를 감안 타 지역 아동이라는 이유로 관내 시설입소를 제한 및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사례 방지 조치.

(나) 면접교섭과 원가정복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보호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아동복지법 제4조제3항)
 - UN아동권리협약, UN대안양육지침도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원가정보호 강조.

- 「아동복지법」상 시설의 원가정복귀 역할
 - 시·도 및 시·군·구의 장은 시설에 보호조치중인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이 가정복귀를 신청할 경우, 시설장으로부터 의견을 들은 후 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않은 경우 가정복귀시킬 수 있음. 다만, 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법정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 양육상황점검결과와 보호조치 목적 달성 여부 등을 평가,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호조치 종결
 - 가정복귀 결정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법 제16조)
 - 시설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 지도를 병행해야 함 (법 제57조).
 -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보호전문요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시설 보호기간 중의 아동의 변화, 아동에게 필요한 의사소통,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하여 상호 공유, 협조하고, 해당기관의 사례회의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제시 필요.

- 면접교섭 및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의5(면접교섭 지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제4호,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 (면접교섭) 분리보호된 아동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와 보호종료 후 아동의 지지체계 확립을 위하여 원가정(가족)과 아동의 지속적 만남을 지원하는 것.
 - (원가정복귀 프로그램) 서비스 전과정에서 보호자의 역량강화 및 아동과 긍정적 상호작용으로 안정적으로 아동을 원가정 복귀시키기 위한 부모교육, 가족상담, 가정방문, 가족 프로그램 등.

- ① 부모(양육기술)교육 : 가족 재결합(부모의 의무, 아동정서 다루기 등) 및 양육의지 등 소규모 집합교육(역할극 포함, 반기별)
- ② 가족상담: 보호종결 전 보호자 및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상담·회의 : 부모·아동에 대한 이해, 긍정적인 애착관계 형성, 상실에 대한 심리상담 등
※ 아동복지시설은 가정방문 또는 가족 외식지원시 병행 가능
- ③ 가정방문: 보호종결 전 보호자로부터 양육계획 및 가정복귀 점검을 통해 아동의 가정 복귀의사 및 보호자의 양육태도 확인
- ④ 가족프로그램: 보호자와 아동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숙박 및 외식지원
※ 「아동보호서비스업무매뉴얼」 제3부-Ⅲ.원가정복귀프로그램 참조

☑ 성공적인 원가정복귀 요인

- 보호대상아동이 분리이후 아동과 원가정의 재연결 또는 재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반드시 원가정복귀라는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더라도 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이 됨.
- 원가정복귀 지원단계 : 관계맺기 →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이행 및 모니터링 → 원가정복귀 결정 후 준비 → 원가정복귀 후 가정기능유지 지원
- 원가정복귀 성공관련 요인
 - 아동과 가족에 대한 철저한 사정
 - 원가정복귀를 위한 충분한 준비와 이에 필요한 시간 확보
 - 아동과 가족에 충분하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 부모가 달라졌다는 명백한 증거 확인
 - 원가정외 보호기관의 원가정복귀 지원 노력
 - 원가정이 고립되지 않고 지역사회로부터 지지받음 등
- 그밖에 양질의 접촉(면접교섭), 원가정 복귀 이후 지원 등도 중요
 - 접촉(면접교섭)* : 아동과 가족에게 도움이 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기에 잘 계획되고 준비되어야 함, 면접교섭 전 원가정(가족)의 정서적 문제, 양육기술 사전교육, 돌발행동 등을 철저히 예측, 대비하여야 함. 아동의 욕구와 '처상' 상황에 기초하여 관계자간의 명확한 소통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절차, 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결정해야 함.
ex) 방문, 여행, 전화, 이메일 연락 등의 직접적 방법, 편지/카드/영상/사진 보내기 등이 있음.
 - 원가정복귀 후 지원 : 복귀 이후에도 일정기간 연락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과정에서 다양한 복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출처 :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 지원을 위한 가이드(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다)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 (근거)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2(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담 등)
- 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 보호조치 전에 아동의 상담, 심리검사 등 실시하여야 함.
 - 긴급보호조치 필요시 보호조치 이후 상담, 심리검사 등 실시 가능.
 - 심리검사 결과를 보호기관(아동복지시설 등)에 알려 아동보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아동의 개별보호·관리계획에 따른 적응 상태, 변화 정도를 주기적으로 (보호조치 후 1개월 내, 분기별) 파악하여야 하고, 아동의 문제 행동 및 정서적 어려움에 대한 예방차원의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 위기 정도가 높고, 장기간·집중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전문적 서비스 제공 기관에 연계하여 서비스 제공 : 아동상담소, 국공립 및 민간병원동, 정신건강복지센터, Wee센터(교육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비행예방센터(법무부) 등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 및 노력하고, 시설 부 적응, 정서·심리적 어려움, 문제행동 등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을 통한 개별 욕구 파악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 시·도, 시·군·구 및 아동복지시설은 해당 아동이 적절한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지원과 함께 유관 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사업 (아동권리보장원 운영)

- (목적) 심리·정서·인지·행동상의 어려움이 있는 시설아동의 문제행동 개선, 건강한 성장 지원
- (지원내용) 아동에게 필요한 상담·치료·아동-원가족간 교류 프로그램 등
- (주요내용)
 - 아동 상담·치료비, 종합심리검사비 지원
 - 아동-원가족간 교류,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지원 : 부모교육, 가족상담, 외식, 체험활동, 캠프 등
- (행정사항)
 - 시설장 및 종사자는 아동이 심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전문가의 제안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청
 - 시·도 및 시·군·구는 관내의 시설아동 중 '아동양육상황점검' 등을 통해 심리·행동상 어려움이 있는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해당아동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

3 아동복지시설의 자율적 예방활동 활성화

아동복지시설내 학대 예방 등을 위해서는 시설장 및 종사자의 자발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

- ☞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협회,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와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우수 시설 및 종사자 표창, 시설평가 반영 등 인센티브 제공 예정

(가) 아동복지협회, 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이하 “유관기관”이라 함) 차원의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 활동

- 유관기관에서는 시설 내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해 소속 회원기관에 적극 안내
- 아동복지시설 내 자율적 아동 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유관기관 내 아동인권센터 및 아동인권위원회 운영

(a) 아동인권위원회

- **(목적)** 내·외부 전문가 참여에 의해 아동복지시설내 아동 학대예방 및 인권 증진 활동의 내실있는 추진 도모
- **(구성)**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관련 전문가, 아동 상담관련 전문가,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등으로 12명 이내로 구성
- **(운영)**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아동복지협회 여건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 유관기관의 장이나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역할)** 유관기관 차원의 아동 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 관련 사항 의견 조정 및 자문, 아동 인권 증진 교육 관련 사항 심의, 기타 아동 인권 관련 사항 심의·조정·자문 등

(b) 아동인권센터

- 유관기관에서는 아동인권 증진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체적으로 아동인권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상근직원 배치 등)

- **(역할)** 아동인권 교육 총괄, 아동·종사자 인권 상담 및 자문, 아동학대 사례 접수 및 실태 점검, 아동학대 사례 발굴 및 전파, 아동인권위원회의 운영 지원, 기타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수행
- 유관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중대한 아동학대 발생 시설이나 학대 예방 노력이 미흡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후원사업 지원제외, 회원 제명처분 등 불이익 조치 가능
 - ※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자체 징계 규정 정비

(나) 아동복지시설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 적극 장려

- 아동복지시설은 시설별 특성을 감안하여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 전개
 - ※ (예시) : 매월 첫째주 월요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로 운영, 학대 예방 실적 공유 및 아동별 상담 결과 분석을 통한 학대 징후 사전 발굴, 등

(다) 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한 아동인권보호 활동 활성화

- 시·도 및 시·군·구와 시설은 시설 운영위원회를 통한 시설별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증진 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침에 기 반영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시·군·구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을 시설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
 -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이 위원으로 위촉·활동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실시
 - 시설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매 회의시 아동학대예방 및 인권 보호 강화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함
 - ※ 주요 보고 사항: 아동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관련 실적 및 계획, 거주 아동 생활 환경 개선 및 고충 처리 관련 사항,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등
 - 위원별 의견에 대한 조치 계획 및 결과는 추후 시설운영위원회 회의시 보고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운영위원회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점검시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참고) 시설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운영위원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설치 운영 등)
- 구성 : 위원장 및 시설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각 대표에서 2명 초과 금지)
- 위원 : 시설의 장, 시설 거주자 대표(시설 보호 아동 중 고등학생 이상), 보호자 및 종사자 대표, 시·군·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후원자 또는 지역주민, 공익단체 추천, 기타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 : 위원내에서 호선
- 운영 : 운영에 필요한 세부 운영규칙을 법령 및 지침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정,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
- 임기 : 3년

※ 자세한 사항은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1), p.224 참고

4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개방성 확대

(가)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운영

- (목적) 아동복지시설 운영 개방성을 확대하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외부인 참여를 통한 학대 예방 및 아동인권 증진 활동을 활성화.
- (대상) 지역 내 아동위원, 학대전담경찰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인권센터 직원, 전·현직 교사 및 경찰관, 시·도 사회복지위원, 시·군·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가정위탁 지원센터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등으로 신원이 확실하고 아동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을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
- (인원) 시·도 및 시·군·구는 시설별로 최소한 1명 이상의 인권 보호관을 지정·임명, 1:1 매칭될 수 있도록 조치.
 - 시설에 여러 명의 인권보호관이 지정된 경우에도 시설별로 1명의 책임자를 지정하고,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 (임면) 시설 관할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 인권 보호관으로 위촉된 경우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명의 위촉장, 신분증 발급(붙임 5).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은 해당 시설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조치하여 실질적 활동 보장.
 - 위촉된 인권보호관이 스스로 활동을 그만두기를 원하거나 활동이 저조한 경우, 기타 인권보호관으로서 활동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권보호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인권보호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 인권보호관을 재위촉하여야 함.
- (주요역할) 아동복지시설을 방문(수시)하여 시설별 아동보호 실태, 종사자 근무 상태, 시설물 안전 및 급식 현황, 기타 아동보호 및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확인·점검(시·도 및 시·군·구에서 인권보호관 역할 추가·변경 가능).

- 인권보호관은 시설 아동 및 종사자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그 결과를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전달하거나, 사례관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 요청 또는 사례관리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음.
- 인권보호관은 시설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해당 시설장이나 시·도 또는 시·군·구에 그 내용을 건의할 수 있음.
- 인권보호관은 시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회의참석 등을 통해 시설내 아동학대예방 및 인권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 (주요활동)

- 시설별로 월 1회 이상 방문·점검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 1회 이상 주말 등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시간에 방문
- 시설 방문시 관할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하며, 시설장이나 종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함.
- 개별 아동과의 면담이 필요한 경우 아동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적 주간에 아동복지시설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외부 면담이 불가피한 경우 2인 이상이 동행). 이 경우 아동복지시설은 인권보호관의 요청에 따라 아동 면담에 필요한 공간, 면담 내용 비밀 보장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취약시간대 방문시 아동의 활동과 수면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종사자 근무상태 위주로 확인하되, 학대 의심 정황 등으로 아동 숙사 방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종사자와 동행하거나, 종사자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조치.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은 아동복지시설 결과 및 활동 내용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다만 아동 학대 의심 사실이나 종사자 근무해태(음주, 근무지 이탈 등), 기타 특이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그 내용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함.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점검 양식 및 인권보호관 신분증 양식은 “붙임4” 참조

● 시설운영 모니터링단 운영

- 시·도 및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및 자문단으로 구성된 아동복지시설 운영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 있음.
- ※ 아동복지시설이 다수이어서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이 수가 많거나, 하나의 시설이라도 여러명의 인권보호관이 임명된 경우 운영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자문단은 아동 인권이나 법률 관련 전문가(아동인권강사, 변호사 등), 영양사(급식 관련 자문), 아동복지관련 교수, 기타 아동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활동이나 아동복지시설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이나 지원 등 역할 수행 (아동복지시설 요청에 의한 자문·지원도 포함).

● **지자체 행정 사항**

-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이 위촉·해촉된 경우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 시설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최대한 인권보호관 활동에 협조하도록 조치.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에 대해 인권보호관 활동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주요 교육 내용 : 아동복지시설 현황,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역할 및 활동 방법, 기타 아동 학대 예방 및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에 대해 아동위원회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이 시설 방문 동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이에 협조하여야 함.

(나) 아동 및 부모, 지역사회의 시설 운영 참여 활성화

● **아동자치회 구성·운영**

- (목적) 아동의 인권 의식 향상 및 아동의 시설 참여 기회 확대.
- (구성) 시설장, 사무국장 및 종사자 대표(1~2인), 부모 및 후원자, 시설내 아동 등
 - 아동 연령,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에서 자체 구성하되, 가급적 많은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 적정 규모는 시설별로 자체 판단하되, 10인 이내 소규모 시설의 경우 전체 아동이 참여하도록 함(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별도 기준 제시 가능).
- (운영) 월 1회 이상 개최 원칙,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 다음월 식단 등 아동의 일상생활 관련 사항, 건의 및 애로 사항 등.

● 부모, 후원자 등 시설 운영 참여 활성화

- 아동복지시설은 아동이 부모와 만남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시 부모 상담 이외에 가족회의 주기적 개최(분기 1회 이상).
 - ※ 가족회의 논의 사항 예시 : 아동복지시설 운영 현황 및 계획, 해당 아동의 시설내 생활 현황 및 적응 상황, 기타 아동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항
 - ※ 가족회의에 최대한 많은 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 연간 가족회의 개최 계획 수립(매 분기말 3번째주 토요일), 가족회의 개최 1~2전 부모들에게 사전 정보 제공 등
- 가족회의 개최시 부모 미 참여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설별로 해당 아동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소풍, 운동회 등) 운영
- 후원자·자원봉사자 등 1:1 멘토-멘티 결연 활성화
 - ※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정기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등과 아동간 애착관계 형성 등을 감안해 결연
 - ※ 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아동과 안정적 관계 형성이 중요한 만큼 멘토 선정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일정기간 이상(예시 : 1년) 지속적·정기적으로 후원·자원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로 성품, 연령, 성별,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멘토-멘티 결연시 반드시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가급적 시설내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1:1 멘토-멘티 결연을 추진하되, 어려운 경우 아동발달상황, 연령, 부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 설정.
 - ※ 애착형성이 중요한 저연령 아동, 부모가 없거나 정서장애가 있는 아동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멘토-멘티 결연 추진- 행정사항 : 시설장은 아동자치회 구성·운영 실적, 가족회의 운영 실적, 멘토-멘티 결연실적 등을 매 반기별로 관할 시·군·구에 보고(보고 양식 ‘붙임 11’ 참조)
 - ※ 시·군·구에서는 아동자치회 및 가족회의, 멘토-멘티 구성·운영 실태를 매년 관리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의견 제시 또는 개선 권고 등 실시
 - ※ 사회복지시설평가 지표(초등학생 이상 아동 멘토-멘티 결연 실적) 반영

☑ (참고)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평가 아동생활시설 평가지표

- 평가지표: C11. 초등생 이상 아동 멘토-멘티 결연실적
- 해당유형: 양육시설(영유아 양육시설 제외)
- 평가목표: 아동의 자존감 향상 및 심리·정서적 지지체계 마련
- 평가내용
 - ① 초등생 이상 ~ 고등학생 이하 아동의 30% 이상에게 멘토가 연결되어 있다.
 - ② 멘토링 체결아동의 30% 이상이 연 2회 이상 멘토와의 교류실적이 있다.
 - ③ 멘토링을 담당하는 직원 및 지침이 있다.
 - ④ 멘토링에 대한 실적이 충실하게 기록되어 있다.
- 배점기준
 - 우수(4점) 항목 ①을 포함하여 4개 항목에 해당될 경우
 - 양후(3점) 항목 ①을 포함하여 3개 항목에 해당될 경우
 - 보통(2점) 항목 ①을 포함하여 2개 항목에 해당될 경우
 - 미흡(1점) 항목 ①을 포함하지 않거나 1개 이하 항목에 해당될 경우

※ 자세한 내용은 2022년도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참고

☑ (참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복지시설평가)
www.w4c.go.kr



☑ (참고) 아동과 함께 일하는 성인을 위한 안내서

유니세프
www.kigepe.or.kr





Chapter

04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등 신고의무 및 대응



1. 신고의무
2.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 절차
3.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04 → 아동복지시설의 아동학대 등 신고의무 및 대응

1 신고의무

(가) 아동학대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아동학대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의해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직군에 대해, 별도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
 -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 또는 시·군·구 긴급전화(붙임 12)로 신고할 수 있음.

구분	신고방법
전화	국번없이 112 시·군·구 긴급전화(붙임 12)
스마트폰 앱	아이 지킴이 콜 112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조사 또는 수사 착수('22. 1. 27일 시행)

- (신고의무 불이행)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의무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양벌규정) 아동학대 발생한 시설의 법인 대표자나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제 74조에 의해 아동학대행위자에 준하여 벌금형(징역형 제외)을 부과
 - ※ 시설장 등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 면제

- **(과태료 부과)** 기관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로 부과됨에 유의.
 - (부과주체) 신고의무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대상기간) 최초 아동학대 인지 가능시점부터 아동학대 신고 접수일까지 기간에서 신고 의무 이행여부를 판단.
 - (부과절차) 의견청취, 이의제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 및 행정절차법령 준용.
- **(신고자에 대한 보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됨(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이익조치(파면/해임/해고 등)를 해서는 안됨(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법적 처벌 과정에 있어 신고자의 인적사항의 기재생략, 신변안전조치, 열람제한 가능.

(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해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
 - ※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 자문 요청
 - 피해아동이나 보호자가 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어 반드시 신고하여야 함.
 - 누구든지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나 시·군·구 긴급전화로 신고할 수 있음.

구분	신고전화	인터넷 신고
경찰청	112	경찰 민원포털
검찰청	지역번호+1301	검찰청 온라인민원실
여성긴급전화	지역번호+1366	1366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성폭력 피해 상담소	전국 성폭력피해상담소(붙임 16 참고)	

- **(신고의무 불이행)** 신고의무가 있는 각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 **(신고자에 대한 보호)**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실종아동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실종아동법」 제6조에 의해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계(경찰신고체계, 실종아동찾기센터 182번)에 지체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
 - 아동복지시설장은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아동 등의 신상을 기록한 카드(이하 “신상카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함
 - ※ 시설장이 보호자로부터 버려진 아동을 발견하여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우선 보호하되, 지체 없이 관할 시·도 및 시·군·구에 보고
 -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음(실종아동법 제7조)
- **(과태료 부과)** 실종아동법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되었으나 실종신고하지 않거나 신상카드를 보내지 않은 신고의무자에게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라)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의해 진료, 상담 등 직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
 -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2 아동학대 신고 및 대응절차

〈집단시설 내 아동학대의심사례 처리 절차〉



* 관할 행정기관 : 지자체 시설 담당과 또는 교육(지원)청 등

(가) 아동학대(의심) 징후 발견

▣ 아동학대 징후 발견시 대응 기본원칙

- ① 모든 판단의 기준은 아동 최우선 보호입니다.
- ② 피해아동은 학대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조치하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합니다.
- ③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처리합니다.
- ④ 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보존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이 학대로 의심되는 징후(상흔, 진술 등)를 발견하거나, 직무(상담)중에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붙임 3)에서 1개 문항 이상 '예'로 체크된 경우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즉시 신고**해야 함.

- 가능한 한 증거 사진, 동영상 등을 확보
- 아동이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하며 일상과 동일하게 아동을 대함
- 아동의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진술의 오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학대에 대해 계속 캐묻거나 유도 질문을 하지 않음
- 아동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말해줌
- 성학대의 경우 증거 확보를 위해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않음

- 시설장과 종사자는 아동 개별상담, 신고함 비치, 폭력실태조사 실시 등 아동학대(의심) 사례의 사전감지를 위한 노력 필요.
- 보호자, 후원자, 피해아동 등이 아동학대(의심)를 내부 신고하는 경우 가장 먼저 피해아동의 상태와 신변을 보호하고, 즉시 신고.
 -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거나 신고를 늦추지 않도록 주의.
- 아동학대로 응급한 상황에 있는 경우 우선 아동의 안전 및 신변을 확보한 후 신고.
 - 아동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아동을 병원에 데려간 이후에 신고
- 피해(의심)아동을 학대행위(의심)자로부터 분리 보호.
- 학대발생으로 인한 시설내 다른 아동들의 충격과 불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의.

(나) 아동학대 신고

- ▼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발견된 경우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
- ▼ 어떤 경우에도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 아동이 응급한 상황에 있는 경우 우선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후 신고절차 진행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112번 또는 시·군·구 아동학대 긴급전화(붙임 12)으로 신고해야 함.

구분	신고방법
전화	국번없이 112
스마트폰 앱	아이지킴 112를 통해 112로 바로 전화 및 문자신고 가능

- 신고인의 신분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 노출 금지.
-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코너를 활용하여, 사진·동영상 등을 촬영하여 신고 가능.
- 신고가 아닌 아동학대 관련 상담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긴급전화(붙임 12 참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가능
 - ※ 성학대인 경우, 전국청소년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 아동센터 상담 등 요청

- 종사자는 아동학대(의심) 신고 조치 후 즉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
- 아동학대 신고 전화 멘트(예시)
 - ① 00보육원(공동생활가정)에 재직하고 있는 보육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 ② 00보육원(공동생활가정)에 생활하는 아동에 대해 ~의 이유로 아동학대가 의심되어 신고합니다.
 - ③ 아동의 현재 상황은 ~~~~~ 합니다. * 아동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아동의 심신상태, 가정 상황 등
 - ④ 아동의 인적 상황은 ~~~~~ 합니다. * 성명, 성별, 연령 등

● **아동학대 신고시 유의 사항**

-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시, 접수자가 학대에 대한 판단 이후 원활한 현장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
 - ※ 피해(의심)아동의 현재 상황, 인적사항, 아동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신고자 관련사항, 아동학대 의심상황, 기타 추가아동 존재여부 등
-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아동의 보호, 학대상훈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협조.
- 지역 내 가족의 상황, 이용 가능한 자원, 이전 학대이력 등에 대한 정보 협조.
-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신고 여부를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
- 피해아동의 비밀을 보호하여 2차 피해를 방지,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협조.

☑ **보건복지상담센터 위기대응상담팀(129)**

- 아동학대 관련 상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112로부터 아동학대 사례 관련 상담전화가 연결되면 이에 대해 응대하고, 상담 중 아동학대 의심 상황인지시, 현장출동이 필요한 경우 즉시 112 통보 및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 **시·군·구 긴급전화(붙임 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행정전화**

- 시·군·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상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112로부터 아동학대 사례관련 상담 전화가 연결되면 이에 대해 응대함
- 상담 중 아동학대 의심상황 인지시 동행출동이 필요한 경우 즉시 112 통보

☑ **아이지킴콜**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위 확대, 신고의무 강화 및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알리고 국민의 인식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앱.
-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및 아동학대예방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수록
-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아이지킴콜’ 또는 ‘아동학대’를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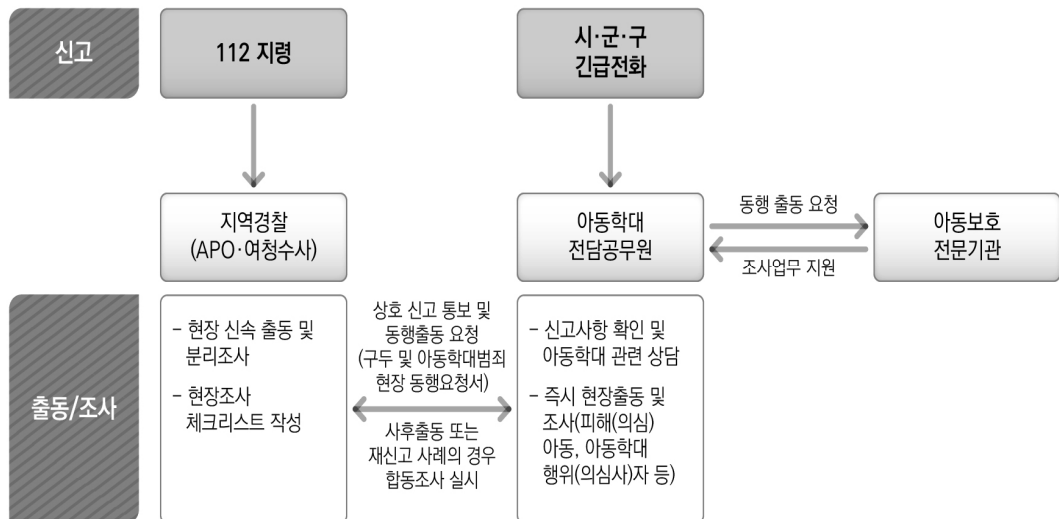
(다) 현장출동 및 아동학대 조사 협조

●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

- 아동학대 의심 사례 신고를 접수한 경우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음.
-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지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한 후 아동학대 조사 및 질문권한이 있음을 고지하고 현장에 출입.
-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음.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또는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만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음.
- 관할기준 :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사건 발생지’ 관할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조사지원)이 사건을 담당함.

※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인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시설 소재지 시·군·구 아동보호전문담요원에게 신고접수내용을 공유하여 합동조사 등 추가 필요한 조치 진행

〈아동학대조사 업무흐름도〉



● **추가조사 및 합동조사**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은 신고 접수된 내용을 바탕으로 피해(의심)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하며, 이후 피해(의심)아동의 진술을 통해 확인된 학대의심 상황을 중심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은 신고접수 내용에 대해 아동학대 발생이 의심되는 해당기관(시설, 학교 등)의 지자체 시설담당부서에 시설 현황공유를 요청하여 이를 통해 조사 전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야 하며, 신고접수 사실을 공유하고, 합동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함.

* 아동복지시설 이용 아동인원,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정보 등

경찰	- 피해(의심)아동,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주변인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 CCTV 열람 및 확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피해(의심)아동 안전 도모 및 피해여부 파악, 아동학대행위(의심)자, 주변인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 시설/기관에서 CCTV 열람
관할 행정기관 (시설 담당과)	- 시설 운영전반 점검 - 해당 시설 원장에게 조사 취지설명 및 자료 수집(아동 및 직원 명단, 아동인적사항 확인) 시설장에게 보호자 동의여부 확인 협조요청, 해당시설 운영 관련서류 검토(운영일지 등)

- 경찰, 관할 행정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 완료 당일 구두로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진술 내용을 공유하고 추가 조사 여부 및 향후 기관별 개입방안을 공유, 피해(의심) 아동 분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실시함.
- 최초 신고 접수된 피해(의심)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의심상황이 신고되어 아동학대 조사를 실시할 예정임을 고지, 아동학대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되는 피해(의심)아동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보호자에게 고지, 아동양육 시설 내 아동학대 발생한 경우, 아동의 친권자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된 경우 친권자에게 고지, 조사 전에 고지하지 못한 경우, 조사 실시 후 고지

※ 아동학대행위(의심)자가 보호자일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음

※ 가급적 집단시설의 장을 통해 조사 실시에 대해 고지할 수 있도록 함.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조사 내용 및 취합된 증거자료를 근거를 바탕으로 학대여부를 판단하고 이후 집단시설의 관리·감독 지자체 부서에 조사결과(시설명, 사례판단근거 및 결과 등)를 공문으로 통보

● 아동복지시설의 조사 협조

- 조사 시간과 장소 등 일정 조율
- 피해아동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장소 제공 등 협조
- 피해아동이 객관적 진술, 심리적 안정 등을 위해 원하는 경우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동석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게 적용. 단, 아동학대행위(의심)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동석할 수 없음
- 관계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조사에 적극 협조
- 시설 현황(아동 및 직원 명단, 아동인적사항 등) 및 시설 운영 관련 서류(운영일지 등) 제출 요청에 협조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피해(의심) 아동의 친권자 등 보호자에게 아동학대 (전수)조사에 대해 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공유, 고지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
- 시설장, 종사자가 아동학대 행위(의심)자일 경우 업무 배제 또는 즉시 분리 조치.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시 CCTV 확인 협조.
 - ※ 경찰은 수사목적으로 CCTV 영상 압수 가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설 방문하여 열람 가능

☑ 현장출동 및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시 처벌 및 과태료

- 현장출동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1항)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며,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1조 제2항, 제3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3호)

(라)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협조

● 보호계획 및 사례관리계획의 수립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
- 보호계획을 통보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치료·교육·상담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 사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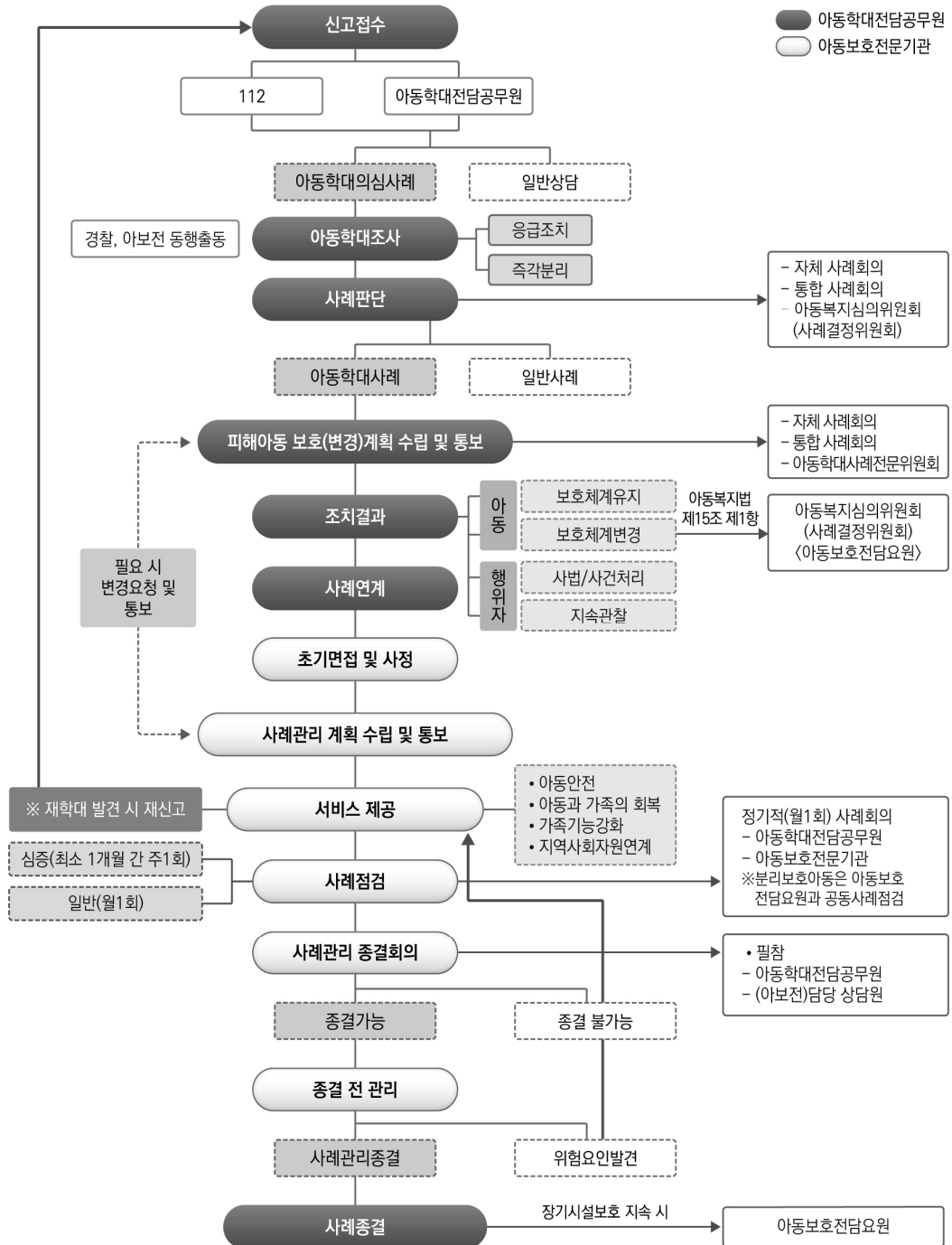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시설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
-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아동복지시설의 사례관리 및 사후관리 협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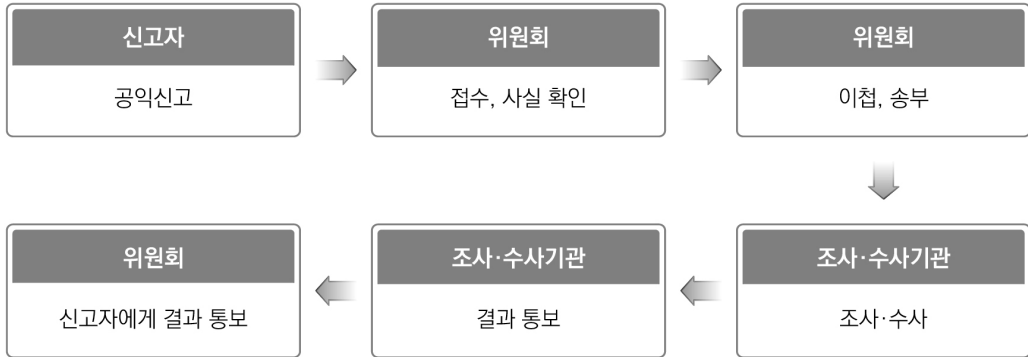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재발 여부 확인(모니터링), 사후관리에 협조
- 아동보호 중 재학대 등 의심스러운 상황 발생 시 신고
-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상담, 교육 및 치료 등에 피해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
- 피해아동 및 신고자에 대한 비밀 엄수
- 시설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자체적 노력 강화

〈참고〉 아동학대사건 업무처리 진행도



3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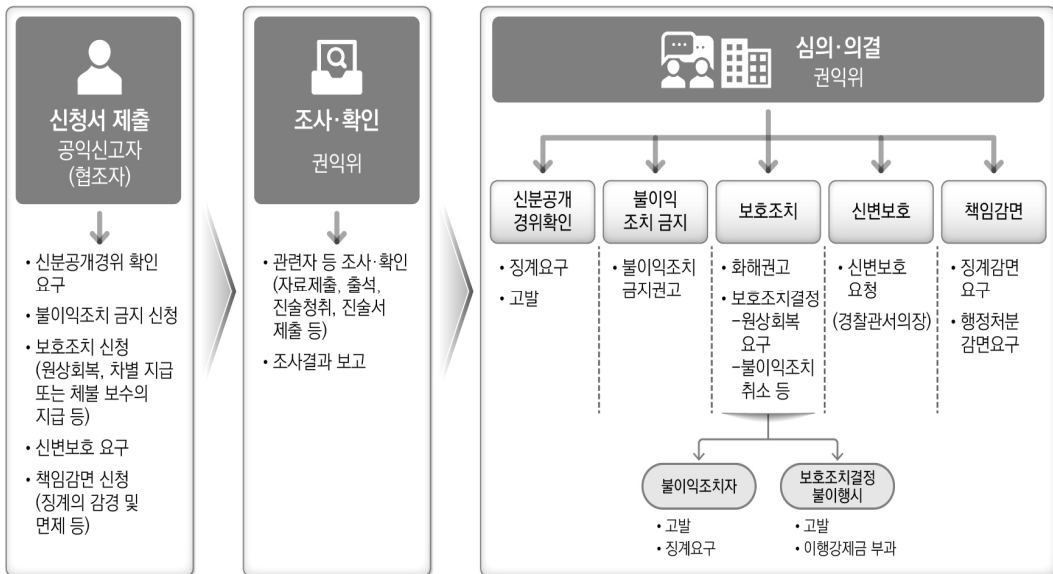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도록 함.(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20.11.20.부터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 대상법률에 추가됨.
 - ※ 기존 공익신고 대상 :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청소년보호법」상 아동·청소년 학대행위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분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음.
 - **(비밀보장 의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이나 공익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
 - ※ 비밀보장 의무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게을리 한 **대표자에게도 벌금 부과**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할 수 없음.
 - ※ 해고 등 신분상의 불이익,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 등
 - **(보호조치 결정)**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위원회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의 지급, 그 밖에 불이익 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 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권익위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함.
-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배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가능.
- **(구조금)**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 보호신청 처리 절차>



※ 문의처 : 국민권익위원회

- ▶ 법 유권해석, 정책질의 : 044-200-7752(보호보상정책과)
- ▶ 사건 접수 : 044-200-7123(심사기획과), 공익신고자 보호 : 044-200-7772~7780(신고자보호과)
공익신고자 구조금 : 044-200-7739~7748(신고자보상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제도

1. 기본개요

- (목적)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 조기발견 및 보호
 -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예시 : 유치원, 아동 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의 장과 종사자
- (근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
- (내용) 신고의무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즉시 신고해야함

2. 신고 불이행시 제재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되었거나 의심이 되었음에도 미신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근거) 법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구 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과태료 금액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 신고자 보호 조치

- (내용)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해 살인 등 강력범죄의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법 제10조의3)
 - * 수사과정에서 인적사항 미기재, 비밀보장, 신변경호 및 주기적 순찰 등

4. 기타

문의 내용		구 분
▶ 신고의무자 범위 관련 문의(개별 법령 소관부처)	➔	기관·시설 관련 담당부처
▶ 신고의무자 제도 관련 문의	➔	법무부(여성아동인권과)



Chapter

05

아동복지시설내 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조치



1.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조치
2. 아동간 폭행 등에 따른 보호조치



05 → 아동복지시설내 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조치

1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보호조치

☑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함

-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등은 아동학대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학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필요 시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우선 취해야 함.
- ※ 아동보호는 원가정의 기능회복과 가족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원가정 지원 원칙”이 중심이 되어야 함. 다만 학대, 질병, 가족해체 등으로 가정이 그 기능을 회복하기 어렵거나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대리양육, 가정위탁, 입양,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기관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음

(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실시

● 학대행위(의심)자와 와 피해아동에 대한 즉시 분리 조치

- 종사자에 의한 아동 학대 의심 사례 적발 시,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학대행위(의심)자에 대해 즉시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장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 「아동복지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자체는 등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일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학대 피해 아동과 아동학대행위(의심) 종사자에 대한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분리조치가 미흡한 경우 발견.

- 학대행위(의심)자와 분리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대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신속한 분리 조치가 필요.
- ☑ 지자체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종사자가 있는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시설 소관 법인 등에 대해 관련 징계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
- 시설 소관 법인 등은 지자체의 권고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결과를 즉시 시설 소관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 시설 소관 법인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인건비 감액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아동복지법 제61조 제5호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피해아동의 위험요인 감소를 위한 조사 또는 상담**

- 피해아동의 특성 및 학대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개별, 집단, 기관, 주변인 상담

●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재학대 방지,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우선적으로 고려 가능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음(법 제29조, 제29조의6, 제29조의7)

• 심리검사·치료비(복지부·지자체)

• 폭력 피해 아동 상담·의료·심리 치료 지원

• 성학대(성폭력)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심리상담, 조사 등,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바라기센터(통합지원센터) 등 성폭력·폭행 피해자 전문보호 시설·서비스 연계·집중적 보호·치료 서비스 제공(해당 시설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및 치료 동행 서비스 제공)

※ 여성긴급전화(1366)에서 24시간 안내

•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의 지원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제도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선정 의무(법 제16조)

• 신뢰관계인의 동석(법 제17조): 피해아동이 수사기관에서 진술, 법정에서 증언할 때 동석하여 심리적 안정, 원활한 소통 지원

• 진술조력인 제도(법 제17조): 피해아동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전문인력이 수사·재판과정에 참여, 의사소통을 증개·보조함으로써 2차피해 방지, 진실 발견에 기여

• 학대피해아동의 돌봄서비스 연계·지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보미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

※ 아동학대·학교폭력으로 신고·수사중인 만12세 이하 아동의 사건 접수증 구비, 지자체에 신청

- 시·도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시설 담당자는 해당 아동의 보호 현황, 적응 상태, 추가 필요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상담·보호조치 변경 등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피해 아동 또는 부모의 의견을 들어 희망하는 경우 타보호시설 전원 조치 또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원가정 복귀 조치를 할 수 있음.
 - 피해 아동이 해당 지자체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아동 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 시·군·구 담당자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 ※ 원가정 보호 조치 : 생계비 추가 지원 등 보호 신설 또는 보호 변경, 긴급 복지 지원, 보육료·아동 양육수당·장애아동 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 의료·주거·교육 지원, 드림스타트와 연계한 지역 사회내 서비스 연계 등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 경찰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기 복지서비스 이외에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해 아동 및 가정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이때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비스가 해당 아동들에게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해당 서비스의 제공·연계를 요청할 수 있음.
 - ※ 「아동복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지자체는 등 아동 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음.
- 지자체의 장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보호받고 있는 거주지 근처의 학교에 우선적 취학 고려, 비밀전학 필요 시 절차 지원.
 - 취학업무 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아동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의 취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을 보호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
- 아동학대로 시설 등에 분리되어 있는 피해아동이 해당 시설 등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아동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주민등록·초본 열람을 통해 피해아동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도록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음. (학대피해아동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제한 신청)

- 피해아동은 분리조치를 실시한 지자체장이 발급한 피해아동 보호사실 확인서 또는 법원의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피해아동보호명령결정서 등의 서류 중 하나를 첨부하여 가족 중 대상자를 지정하여 본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성폭력·폭행 피해자 전문 보호시설·서비스 현황〉

기관(개소수)		지원 내용
성폭력 피해 상담소 (신고시설 168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 신고 및 상담 •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동행 •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대해 법률 구조 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교육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인가시설 34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고소와 피해배상 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대해 법률 구조 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전담의료기관 (지정기관 302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응급실 원내 조제·투약)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증거채취(응급키트 활용) • 성폭력 피해자 치료 • 요청 시 사법기관 증언
무료법률구조 (사업수행기관 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가사 소송 대리: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소송 대리 • 형사 소송 지원: 피해자의 무료변호, 수사의뢰, 수사기관 사건조사 동행, 고소 대리 등 지원 * 수행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통합 지 원 센 터 (39개)	위기지원형 (15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응급 상담, 외상치료, 증거 채취 • 의료 및 상담 지원 • 무료법률변호사 등 법률기관 연계 • 피해자 진술조서, 진술녹화, 고소지원, 법적절차 정보제공 • 지역 피해자 지원 기관 연계(상담소, 보호시설 등) * 24시간 여성경찰관 및 상담사 상주
	아동형 (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청소년, 지적장애인 피해자 장기간 집중 치료 • 심리치료(가족포함), 사례관리 • 부모 양육상담 등 부모 교육 • 사법절차 모니터링
	통합형(17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지원형 및 아동형 기능 모두 수행
피해자 치유 회복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 * '16년 90여개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사업비 지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 대상으로 성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치료, 낙태 및 출산 비용, 성매개 감염 검사 등 지원 • 간병비 : 입원중인 성폭력 피해자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에게 간병비 보전 지원

▣ 참고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 조치 주요 내용

- 피해아동에 대한 응급 조치(법 제12조)
 - 응급 조치 내용 : 범죄행위 제지, 행위자 격리(72시간), 보호시설 인도, 의료기관 인도 등
 - 응급 조치 집행 : 사법경찰관리·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아동이 보호를 요청 하거나, 「아동학대 판단척도」를 활용하여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현장 판단을 실시하고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간의 의견을 조율하여 상황에 적합한 응급조치를 실시
 - 응급조치 기간 : 아동학대행위자의 격리, 피해아동의 보호시설·의료기관 인도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기 기산점은 각각 '격리', '인도'를 기준으로 하며 검사가 응급조치 후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 위 응급조치의 기간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됨
 - ※ 다만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고,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는 일시적인 행위이므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아동학대행위자 대한 긴급 임시 조치(법 제13조)
 - (개요)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사법경찰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아동학대처벌법 13조)
 - (절차) 사법경찰관은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 피해자국선변호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 실시
 - (내용) 피해아동 또는 가족구성원으로부터 격리,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 ※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아니한 때는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함
- 임시조치
 - (개요)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이후 법원의 판단을 통해 아동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법 제14조, 제15조)
 - (절차)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으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함
 - (종류) 필요적 임시조치 및 임의적 임시 조치로 구분
 - (필요적 임시조치) 응급조치(아동학대범죄 행위 제지 제외)나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사법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해당 조치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필요적으로 받기위한 후속절차로 필요적 임시조치를 청구(아동학대처벌법 15조)
 - (임의적 임시조치)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졌는지와 무관하게 검사의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의해 검사가 임시조치를 청구(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
 - ※ 임시조치의 대상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 포함된 피해아동 등이다.(아동학대처벌법 14조)
 - (내용) 피해아동·가족구성원의 주거·학교·보호시설에서에서의 퇴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아동·가족 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 제한·정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교육위탁,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나) 피해아동 이외의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 시·도 또는 시·군·구는 가해·피해아동 이외의 아동에 대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중대한 학대 피해가 발생했거나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 시설아동 전체 및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
 - 상담 결과 심리 치료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에 준하여 서비스를 제공.
- 상담 결과 심리 치료 등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에 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 및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타시설 전원·원가정 복귀 등 조치를 취해야 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에 대한 중대한 학대·폭력 행위가 확인된 경우, 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나 그 이외의 경우라도 종사자 대다수가 연루, 아동이나 부모에 대한 상담 결과 대부분이 타 시설로 전원 또는 원가정 복귀 등 사유로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 아동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시설폐쇄 조치를 할 수 있음
 - ※ 「아동복지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제13조 1의 라.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1차 위반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2 아동간 폭행 등에 따른 보호조치

(가) 아동간 폭행이란?

- 시설 내외에서 아동간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함.
 - ※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폭력에 해당함.
- 종사자가 아동에 주의를 기울이면 폭력 발생 전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으므로, 폭력 상황을 감지·인지하였을 때 적극적, 신속하게 개입.
 - ※ 아동간 신체폭력 이외에도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강제적 심부름, 따돌림 등도 폭력이 됨을 인지, 지도하여야 함.
 - ※ 핸드폰 문자 욕설, 협박 등 사이버폭력에 대해 위험성 교육, 지도 필요

(나) 사건발생 신고

- 시설에서 아동간 폭행 등 발생시,
 - 경미한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등에서 처리하되 지방자치단체(시설담당) 보고.
 - 중대한 경우, 수사기관(경찰) 신고, 지방자치단체(시설담당) 보고.
 - ※ 성폭력은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 피해아동이 성폭력 사실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더라도, 신고 의무에 대해 알리고 반드시 신고.

(다) 초기대응

- (보호조치) 가해아동과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하여 보호, 가해아동 눈빛·표정 등으로 피해 아동에게 영향력 행사 못하도록 조치.
 - ※ 피해아동의 피해 정도와 가해아동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의 의사에 따라 가해아동의 전원조치 검토. 전원조치는 “제6부 1. (다) 시설 사업 정지 또는 시설 폐쇄시 아동 보호를 위한 경과 조치”에서 전원조치 부분 참고

- (피해아동) 피해를 당한 아동의 마음을 안정시키고(심호흡, 안정을 유도하는 말) 신변안전 확보, 필요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
 - ※ 현장에 있던 모든 증거자료는 섞거나 없애지 말아야 함. 관련 자료는 추후 법적, 의료적 분쟁이 있을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응급조치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
- (가해아동) 피해아동의 상태가 위중하거나 외상이 심한 경우, 가해아동 역시 충격을 받아 예측하지 못하는 돌발행동을 할 수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지나친 질책 및 감정적 대처를 하지 않도록 유의.
- (목격아동 등 주변아동) 폭력을 목격하거나 폭력 현장에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정서적 충격을 받은 간접 피해자도 유사한 문제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 주변 아동의 현장 접근을 통제하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동화책 읽어주기, 종이접기 등 흥미 있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려 심리적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 사안에 관련된 아동 및 목격한 아동들에게 상황을 인식시키고, 차후 유사한 폭력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예방교육 실시, 사안에 관련된 아동에 대해 낙인을 찍어 따돌리거나, 사실과 다른 소문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

(라) 피해아동 등에 대한 지원

-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 아동복지시설은 해당 아동을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분리보호 및 전원 등)를 해야 함,
- 폭력 피해아동·주변의 아동 모두에게 지역내 외부 전문기관(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과 연계하여 전문가에 의한 상담·의료·심리치료 등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준하여 지원

(마) 가해아동에 대한 지원

- (목적) 일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간 성폭행 또는 폭력 등 사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방향) 시·도 또는 시·군·구 담당자, 아동복지시설은 가해 아동 또한 보호 대상 아동임에 유의하여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함.
 - ※ 아동이 가해자이자 동시에 피해자인 경우 피해자에 준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도록 함
- (주요 서비스) 심리 검사·치료비 지원,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가해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치료·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 관련 기반과 연계한 재범 방지 교육 등 실시.

- (가해아동 선도조치) 시설 내에서 계속 보호될 경우, 피해아동에 대해 서면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하여 서로 화해하도록 조치, 피해아동과 분리(방 이동), 상담 및 봉사활동 등의 반성의 기회 제공, 신고아동에 대해 더 이상의 폭력, 보복을 하지 않도록 조치.
- 아동에 의한 폭력 등의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처분과 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만,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우범소년 규정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여성가족부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 재범방지 교육

- (개요) 성폭력 가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적기에 상담치료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년원, 보호관찰소 및 교과부 Wee Center 등과 연계하여 지원
 -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찾아가는 상담·교육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 기 완료
- (내용)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매뉴얼 교육을 이수한 전문강사가 상담 및 치료교육을 실시하고, 7명 내외로 집단을 구성(필요시 개인상담 병행)

주요 범죄유형	교육의뢰기관	교육지원 방식	교육시간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가해자	아동복지기관, 보호관찰소, 소년원, 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 등	상담치료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교육이수 강사파견	20~40시간 내외

☑ 여성가족부의 성폭력 가해청소년과 함께 하는 부모 교육

교육대상	교육의뢰기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신청
수강명령 또는 교육 의뢰된 성폭력 가해청소년 및 보호자	법무부, 교육부 등	청소년·보호자간 의사소통 및 친밀감 형성 훈련, 보호자 대상 폭력예방 및 자녀 이해하기 등	5~8시간	택틴내일 (02-338-8245)



Chapter

06

아동복지시설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및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2. 아동학대 발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06 — 아동복지시설내 아동학대행위자 처벌 및 아동학대 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1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처벌

(가) 형사처벌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법 제4조 제1항),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법 제4조 제2항),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때는 3년 이상의 징역(법 제5조)에 처하며,
 -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법 제6조),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함(법 제7조).
- 이와 별개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금지행위를 정하고, 금지 행위 위반시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금지 행위 및 처벌 규정 - 「아동복지법」 제29조 >

금지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처벌 규정(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호) 아동 매매	10년 이하 징역
(제2호)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제3호) 신체적 학대 행위 (제5호) 정서적 학대 행위 (제6호) 보호·양육 등 방임행위 (제7호) 장애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제8호)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9호)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제10호) 정당한 권한을 가진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 요구·약속하는 행위 (제11호) 아동을 위해 증여·급여된 금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복지시설내 아동학대 범죄 발생시 대검찰청의 강화된 사건 처리 기준('16.11월 발표)에 따라 강력사건에 준하여 수사하고, 구형량 결정시 가중 처벌하는 등 엄정 수사 방침임.
-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아동복지법 제74조)**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도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
- **피해아동 등에 대한 합의 강요 또는 답변 방해 등 금지**
 - 누구든지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하거나 거짓 답변, 답변 방해 등 행위를 할 수 없음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0조).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복지시설과 아동의 주소·거소, 아동의 고용장소 또는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
 - 「아동복지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아동복지법 제71조제3항제7호)

(나) 취업제한

- **목적**
 - 아동학대관련범죄자가 아동관련기관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을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된 날로부터 일정기간동안(법원이 선고한 취업제한명령기간, 10년 이내) 아동관련기관의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가 제한됨(아동복지법 제29조의3).
- 상근직 뿐만 아니라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모두를 포함. 특강 강사, 운전기사, 청소 노동자, 사회복지무원 등과 일일 강사, 유상계약을 맺고 일일 강사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도 포함.

〈 아동학대행위자 취업제한 기관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아동복지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수행기관(드림스타트) • 입양기관,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 지방자치단체(아동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한정),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1호 24호 25호
가정폭력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2호
가족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 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3호 4호 20호
성매매 및 성폭력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외국인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 	5호 6호
어린이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7호
교육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치원(국립유치원,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학원, 교습소(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경우) * 학교교과교습학원 전체, 평생직업교육학원 중 성인대상어학·통역·번역·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은 제외, 교습소 전체 	8호 18호 19호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에 한함 	9호
장애인 복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장애인생산물 판매시설) 	10호
정신보건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병원,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11호
주택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관리사무소 * 경비업무 종사자에 한함 	12호

구분	기관·시설 현황	비고
청소년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13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 청소년이용시설*(문화시설, 과학관, 체육시설, 평생교육기관, 자연휴양림, 수목원, 사회복지관)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 공연장(종합공연장, 일반공연장, 소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도서관, 문고), 지역문화복지시설(문화의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문화보급·전수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 종합시설 - 과학관(「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휴양림(산림욕장 포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20조) - 수목원(「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사회복지관(「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 시민회관·어린이회관·공원·광장·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1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15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재활센터 	16호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빙상장, 사격장, 수영장, 스키장, 썰매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자동차경주장, 조정장,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축구장, 탁구장, 테니스장, 핸드볼장 등(「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아동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에 한함 	17호
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운영 법인 * 법인 산하의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아니라 법인사무를 하는 사람에 한함 	2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2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 허가를 받아 아동인권, 아동복지 등 아동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대표자 및 아동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23호

● 취업(예정)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확인(아동복지법 제29조의 3)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경찰서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봄.

-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아동학대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인·허가증 등)를 첨부하여 경찰서에 신청함.
 - 범죄경력회보서발급시스템으로 경찰서 방문 없이 인터넷 발급 가능
-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확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함.

●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자 취업 점검·확인 및 보고**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동 기관에 취업 중인 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해당 시설의 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확인 여부를 점검하거나 직접 또는 관계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 전력 등에 대한 확인하여야 함.
 - ※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 등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2항).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직접 아동학대 전력 등에 대해 점검·확인시에는 직접 경찰서에 전력조회를 요청하여 운영 및 취업여부 등을 점검·확인하되, 이 경우 대상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됨.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에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경우 시설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함.
 -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아동복지법 제75조제1항제2호).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복지시설을 운영 중인 경우 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함.
 - ※ 폐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동 관련기관을 폐쇄하거나 등록·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이를 요구할 수 있음

● **점검·확인 결과 인터넷 공개**

- 공개사항 : 점검·확인 기간, 아동관련 기관 수 및 인원 수, 취업제한등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 관련기관의 수, 명칭, 해당 기관 소재지의 시·군·구명, 해당 기관별 취업 제한 대상자의 수, 취업제한 등 대상자가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아동 관련기관에 대한 조치계획 및 조치한 내용

- 공개기간 : 점검·확인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12개월 동안 공개함
- 공개방법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www.ncrc.or.kr)를 통해 인터넷 공개

(다)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징계 규정 강화

● 목적

- 아동복지시설내 아동 재학대를 방지하고, 아동복지시설 자체 노력에 의해 학대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자체 징계규정 정비.

● 아동복지시설 자체 징계 규정 개정 방향

-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 조사에 의해 아동학대 의심 종사자가 적발된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1차적으로 직위해제 등 직무 배제를 위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함.
- 아동 학대조사 진행 중이더라도 아동학대 여부가 확실한 경우 또는 경찰·검찰 조사 및 법원 판결 등에 따라 아동 학대 여부가 명확히 확정된 경우에는 학대 정도, 아동의 피해 정도·범위 등을 감안하여「근로기준법」등 관련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무급 정직 이상의 중징계 조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함.

● 행정 사항

- 시·도 또는 시·군·구는 관련 징계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도록 해당 법인 또는 시설에 권고하고, 실제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 여부 등에 대해 관리 감독하여야 함.
- 아동복지시설은 시·도 또는 시·군·구 권고에 따라, 또는 자체적으로 징계 규정을 정비하고, 관련 사항을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에 보고.
- 자체 징계 규정 정비 여부, 규정 준수 여부 등은 향후 시설 평가,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 적용 등에 반영하여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2 아동학대 발생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가) 기본 방향

- 아동복지시설의 학대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학대 발생시 최대한 자진 신고 및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학대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경감하되, 아동 학대 사실을 고의로 감추거나, 조사를 방해·회피 등을 한 시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조치
 - 다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시에도 아동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 아동의 의사를 반영한 보호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완료된 이후에 행정 처분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함

(나) 학대발생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 기준(아동복지법시행령 제53조 및 별표 16)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의 기준이 다를 때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 라. 위반행위가 4개 이상이거나 아동에 대한 학대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 시에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마.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각 한 차례에 한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시설의 장 교체를 갈음하여 개선명령을, 시설 폐쇄를 갈음하여 시설의 장 교체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은 차수의 산정에 산입하지 않는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라.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법 제56조 제1항제4호			
1) 보호대상아동에게 성적 폭력이나 성적 가혹행위를 한 경우		시설 폐쇄		
2) 보호대상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시설 폐쇄		
나) 가) 외의 경우		1개월 이내 사업정지	3개월 이내 사업정지	시설 폐쇄
3) 아동복지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방임한 경우				
가) 보호대상아동에게 중대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		시설 폐쇄		
나)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를 소홀히 한 경우로서 가) 외의 경우		1개월 이내 사업정지	2개월 이내 사업정지	3개월 이내 사업정지
다) 보호대상아동에게 법 제31조에 따른 교육 등 기본적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		7일 이내 사업정지	15일 이내 사업정지	1개월 이내 사업정지

(다) 시설 사업 정지 또는 시설 폐쇄시 아동 보호를 위한 경과 조치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시설의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폐쇄되는 경우 해당 아동복지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그 보호자(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게 해당 아동을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조치(이하 “전원조치”라 한다)의 필요성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하고 그 의견을 고려하여 해당시설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는 등 **아동의 권익을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함.

- 아동보호전담요원은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사례결정위원회 심의 상정

- ☑ 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보호 조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사전 예고 할 수 있음
- ☑ 사전 예고 후에도 동 매뉴얼에 따른 시설장 또는 종사자의 아동학대행위에 대한 직무 배제, 학대 피해 아동 지원 등조치를 병행해서 실시되어야 함
- ☑ 사전 예고 후 아동 보호가 소홀해 질 우려가 있거나, 아동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소관 법인에 시설장 교체를 요청하거나 관선 시설장 임명 협의, 타 기관에 시설 운영 위탁(개인운영 시설의 경우)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아동과 부모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아동보호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군·구는 아동과 친권자, 후견인 등이 원가정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아동의 복귀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아동 거주지 관할 읍·면·동과 연계해 원가정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다만, 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법정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 원가정보호에 필요한 조치 :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 필요한 급여 신청·지급, 긴급 복지 지원,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미혼(부)모 및 한부모 가족 지원, 지역아동센터 연계, 드림스타트·희망복지지원단 연계, 기타 해당 가구의 욕구에 대한 상담 결과를 토대로 통합적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지원 등.
- 아동이 타 지역 시설 전원을 희망하는 경우 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당 지역 시설 관할 지자체에 희망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의뢰하며, 의뢰받은 시·도 또는 시·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함.
- 아동이 아동복지시설 소재 지역내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해당 지역내 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전원, 가정위탁 보호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실시함.
 - ※ 아동이 다수이어서 해당 지역내 공동생활 가정이나 가정 위탁 등을 통해 보호가 어려운 경우 해당 지역내 공동생활가정 신설 등 우선 추진, 이 경우 해당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해당 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최우선적 운영비 등 예산 지원 예정임.
- 시설 관할 시·군·구에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1차적으로 시·도, 2차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조정을 의뢰할 수 있음
 - 협조 요청 또는 조정을 의뢰받은 시·도는 아동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내 아동복지시설 정·현원 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시·군·구에 제공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또는 시·군·구의 요청에 의해 시·도 관할 시·군·구 및 아동복지시설 간 협의·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가 완료된 후 또는 보호 조치가 확정된 이후 아동복지시설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는 청문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함.



붙임



1. 관련기관별 역할
2. 관련 법령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
4.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점검·신분증 및 임명현황 보고 양식
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6. 아동 권리보호를 위한 미디어관계자 서약서 등
7. 종사자 스트레스 자가진단
8. 성인 우울 자가선별검사
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양식
10. 아동 대상 안전 및 인권 교육 결과보고 양식
11.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양식
12.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 관련 긴급전화 설치 현황
13.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14.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15. 해바라기센터 현황
16. 성폭력상담소 현황



1 관련기관별 역할

(가) 보건복지부(아동학대대응과)

- 아동학대 대응 정책 수립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총괄
- 예산지원 및 실적 총괄 관리
- 사업 평가
-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 운영(아동권리보장원 위탁)

(나) 경찰청(아동청소년과)

-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과 관련한 법·제도·정책 마련 및 개선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계 지원
- 학대예방경찰관(APO) 제도 운영
- 아동학대 관련 예산 운영
- 아동학대예방 홍보 및 교육 지원

(다) 시·도(아동학대담당부서)

- 사업지역 인력배치·정원 조정, 조례개정 등 지원
- 사업계획 검토·조정 및 국고보조금 예산 집행
-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관리·감독
- 아동학대 관련 업무 및 운영 지원

(라) 시·군·구(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 아동학대 사례판단(신체적·정서적 등)
-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연계
-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사례관리의 종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피해아동 등에 대한 사례관리의 지도·감독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통한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의 처리
-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역량강화

(마) 시·도 경찰청 경찰서(여성청소년수사팀)

- 아동학대 신고접수(112) 및 지자체에 관련사실 통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동행출동 및 현장조사
-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수사
- 유관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바) 아동권리보장원(아동학대예방본부)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아동보호전문기관) 직무 교육
- 아동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사) 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 위한 상담·치료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정보입력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 아동학대예방·피해아동보호와 관련된 기관간의 연계
-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아) 아동복지시설

- 시설내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 아동학대(의심)에 대해 경찰(112번) 신고
- 피해아동 등 보호조치
- 아동학대 수사 협조
- 사례회의 참여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 지원 등

2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5. “지원대상아동”이란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6.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7의2. “아동학대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 나. 아동에 대한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부터 제255조까지의 죄
8.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9. 삭제 <2016. 3. 22.>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 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2016. 3. 22.>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 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27.>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7.>

제13조(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①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전담공무원은 아동에 대한 상담 및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확인 및 지도·감독 등 지역 단위에서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⑤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단체(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증진을 목적 으로 설립된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 또는 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인력(이하 “민간전문인력”이라 한다)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제14조(아동위원) ① 시·군·구에 아동위원을 둔다.

②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③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④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개정 2016. 3. 22.>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가정 복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을 상담·치료한 의사의 의견을 들은 후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킬 수 있다. 다만, 보호대상아동이 복귀하는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교육·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 3. 22., 2020. 12. 29.>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보호조치 중인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2021. 8. 1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해당 아동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하여 긴급히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시행일: 2022. 2. 18.] 제16조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16. 3. 22.]

제16조의3(보호기간의 연장)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보호조치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보호조치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자립 능력이 부족하여 보호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료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가정 및 각종 아동복지시설에서 그 사람을 계속하여 보호·양육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1.]

[시행일: 2022. 6. 22.] 제16조의3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021. 12. 21.>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시행일: 2022. 6. 22.] 제17조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4. 7.>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0. 4. 7.>
- ⑤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고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 4. 7.>
- ⑥ 보장원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9. 1. 15., 2020. 4. 7.>
1.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2.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 발간
 3. 효율적인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4. 아동학대예방사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5. 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쉼터 직원 및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직무교육, 아동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6.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⑦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2020. 12. 29.>

1.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제3항 각 호의 업무
2. 보장원의 장: 제6항 각 호의 업무
3.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제4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시행일: 2022. 7. 1.] 제22조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21. 12. 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는 사실을 고지할 수 있고,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3. 27.>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2017. 10. 24.>

1. 삭제 <2017. 10. 24.>
2. 삭제 <2017. 10. 24.>
3. 삭제 <2017. 10. 24.>
4. 삭제 <2017. 10.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시행일: 2022. 6. 22.] 제26조

제27조의2(아동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② 사법경찰관 또는 보호관찰관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③ 제1항 및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은 피해 아동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본조신설 2014. 1. 28.]

제27조의3(피해아동 응급조치에 대한 거부금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본조신설 2014. 1. 28.]

제28조(사후관리 등) ①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보장원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아동학대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③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보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3. 22., 2019. 1. 15.>

제28조의2(아동학대정보의 관리 및 제공) ① 삭제 <2020. 12. 2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와 아동학대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 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2020.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의 보호 및 아동학대 발생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피해아동,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2019. 1. 15., 2020. 12. 29.>

1.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판사, 검사 및 경찰관서의 장
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4. 제29조의7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장
5.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6.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아동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아동정보시스템상의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정보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24., 2020. 12. 29.>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취득한 사람은 제3항에 따른 요청 목적 외로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0. 24.>

⑥ 삭제 <2020. 12. 29.>

[본조신설 2014. 1. 28.]

[제목개정 2020. 12. 29.]

[시행일: 2022. 7. 1.] 제28조의2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 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1. 12. 21.>

1. 성폭력 예방
- 1의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②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2. 6. 22.] 제31조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 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시행일: 2022. 6. 22.] 제35조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9. 1. 15., 2020. 4. 7.>
-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2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 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제4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① 삭제 <2019. 1. 15.>

-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19. 1. 15.>
 - 1. 삭제 <2020. 4. 7.>
 - 2. 삭제 <2020. 4. 7.>
 - 3.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4.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5.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6. 삭제 <2020. 4. 7.>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54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① 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의2(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마약류에 중독된 자

[본조신설 2020. 12. 29.]

제55조(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아동복지단체나 그 밖의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6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 6개월 이내의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1.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3. 설치목적의 달성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학대행위가 확인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
6. 아동복지시설의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과 교육훈련시설(대학 및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위탁 취소 또는 시설 폐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을 다른 시설로 옮기도록 하는 등 보호대상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2., 2021. 12. 21.>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나 시설의 폐쇄 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3. 22.>

[시행일: 2022. 6. 22.] 제56조

제57조(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2.>

[제목개정 2016. 3. 22.]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7. 10. 24.>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12. 29.>

1. 제2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피해아동관련 정보를 요청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2. 제6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6. 3. 22., 2017. 10. 24., 2020. 4. 7., 2020. 12. 29.>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1조제2항에 따라 다른 아동복지시설로 옮기는 권익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

2의2. 삭제 <2020. 12. 29.>

- 2의3. 삭제 <2020. 4. 7.>
-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 4.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54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전문인력의 자격을 인정 받은 자
- 5. 제56조에 따른 사업의 정지, 위탁의 취소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그 시설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한 자
- 6. 삭제 <2020. 12. 29.>
- 7. 제66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거나, 아동에게 답변을 거부·기피 또는 거짓 답변을 하게 하거나 그 답변을 방해한 자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3. 피해아동 보호 절차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 시켜야 한다.

③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24.>

④ 삭제 <2018. 4. 24.>

⑤ 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은 집합 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0. 6.]

제27조(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용품의 안전기준) 법 제30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안전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아동용품의 안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 3. 6.>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별표 6의 교육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3. 6.>

② 법 제3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각각 교육계획 및 교육실시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6.>

③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그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6. 5. 29., 2021. 3. 16.>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혹사)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 활동을 말한다.
-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8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항의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실형(實刑)을 선고할 경우에 병과한다.

③ 법원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외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경우에는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기 내에 각각 집행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이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와 병과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집행하고,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징역형의 실형과 병과된 이수명령을 모두 이행하기 전에 석방 또는 가석방되거나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남은 이수명령을 집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아동학대 행동의 진단·상담
2. 보호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게 하기 위한 교육
3. 그 밖에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형벌과 병과하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제3장 아동학대범죄의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 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조사 또는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시행일: 2022. 1. 27.] 제10조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5. 29.]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복지법」 제22조 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 또는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⑤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 아동,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 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⑥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⑦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이 동행하여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장출동에 따른 조사 등의 결과를 서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제11조의2(조사)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1. 26.>

② 제1항에 관하여는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7조,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조사”는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로, “행정기관”은 “시·도 또는 시·군·구”로, “조사대상자”는 “아동학대행위자 및 관계인”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 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② 사법경찰관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본문의 기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26.>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다. <신설 2021. 1. 26.>
 - ⑤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 ⑥ 제5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 ⑦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 ⑧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위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신설 2021. 1. 26.>
- [제목개정 2020. 3. 24.]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5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 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26.>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증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피해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 3. 16.]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 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개정 2020. 3. 24.>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신설 2020. 3. 24.>

제17조의2(증인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증인이 피고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신체에 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증인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즉시 증인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26.]

제4장 아동보호사건

제18조(관할) ① 아동보호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② 아동보호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이하 “판사”라 한다)가 한다.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임시조치의 고지) 법원은 제1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에 따른 보조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7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1조(임시조치의 집행)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상황에 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③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시조치 후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을 옮긴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임시조치 결정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임시조치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제22조(임시조치의 변경) ① 아동학대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임시조치를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임시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 또는 제19조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그 임시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제23조(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 ① 판사는 제19조제1항제4호의 임시조치로 인하여 피해아동등에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임시조치의 기간 동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② 제1항의 경우 판사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선임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③ 법원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피해아동등,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등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9. 1. 15., 2020. 3. 24.>

- ④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아동등이 소유한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⑤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 제949조를 준용한다.
- ⑥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선임, 사임 및 변경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30조(송치 시의 아동학대행위자 처리)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송치결정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검사의 이송지휘를 받은 때부터 관할 법원이 있는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에서는 24시간 이내에, 그 밖의 시·군에서는 48시간 이내에 아동학대행위자를 관할 법원에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와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3조 또는 제205조의 구속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구속영장의 효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한 때에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1조(송치서)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는 경우에는 송치서를 보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서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피해아동과의 관계 및 행위의 개요와 가정 상황을 적고 그 밖의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이송) ① 아동보호사건을 송치 받은 법원은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적절한 조사·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그 사건을 즉시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첨부하여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3조(보호처분의 효력)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1조제1호에 따라 송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제41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때

③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2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다.

③ 피해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아동학대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7조(보호처분의 기간)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각각 2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보호처분 결정의 집행) 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의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상황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③ 보호처분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아동보호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24.>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 이행을 관리하고, 아동

학대행위자가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제39조(보고와 의견 제출 등) ① 법원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 처분을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처분의 이행 실태에 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법원은 필요한 경우 제38조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로 하여금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보호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의 기간은 2년을,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④ 법원은 제1항에 따라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보조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제41조(보호처분의 취소) 법원은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처분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그 보호처분을 취소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제28조에 따라 검사가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
2. 제29조에 따라 법원이 송치한 사건인 경우에는 송치한 법원에 이송

제42조(보호처분의 종료)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그 밖에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호

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제43조(비용의 부담) ①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시조치 또는 제3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는 위탁 또는 보호처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준용)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보호처분 및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의2, 제19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9조까지, 제42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본다.

제45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19조의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36조의 보호처분, 제40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1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44조가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임시조치·보호처분의 항고·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본다.

제5장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6조(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아동학대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

②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심리와 결정은 판사가 한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0. 3. 24.>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⑤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⑥ 제1항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9., 2020. 3. 24.>

⑦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17. 12. 19., 2020. 3. 24.>

제48조(보조인) ①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 대하여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행위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6조에 따른 변호사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③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이하 제49조에서 같다)가 아닌 사람을 보조인으로 선임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판사는 언제든지 제3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보조인과 연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해아동·아동학대행위자 사이의 신분관계 또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의 직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절차행위를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해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절차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9조(국선보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거나 피해아동 또는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직계친족·형제자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피해아동의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1. 3. 16.>

1. 피해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2.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판사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가 「형사소송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변호사를 아동학대행위자의 보조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0. 3. 24.>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③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④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⑤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26.>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2020. 3. 24.>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③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3. 24.>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판사가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3조(이행실태의 조사) ① 관할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보호관찰관 등으로 하여금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관할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받은 아동학대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54조(병합심리) 법원은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병합하여 심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아동보호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 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제목개정 2020. 3. 24.]

제55조의2(자료요청 및 면담) ① 법무부장관은 아동학대 및 아동보호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통계 등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의 실태파악 및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관계인을 면담하거나 질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56조(준용) ①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가정보호사건”은 “아동보호사건”으로, “가정폭력행위자”는 “아동학대행위자”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가정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보호 처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7조(항고와 재항고) ①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때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때에는 피해아동, 아동학대행위자, 법정 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③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의 항고 및 재항고에 관하여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제3항 및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제58조(위임규정)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조사·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9.>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 12. 19.>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0조(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 또는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5. 29.>

③ 제35조제2항의 보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신문의 편집인·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그 밖의 출판물의 저작자와 발행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본조신설 2016. 5. 29.]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2021. 1. 26.>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입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제64조(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 의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직원 및 진술조력인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제17932호, 2021. 3.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선변호사 및 국선보조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 및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아동학대범죄부터 적용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피해아동 보호의 원칙) 검사,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그 직원 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 또는 청구 등을 할 경우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안전과 보호 및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증진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인권을 옹호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 1. 26.>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를 함께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이들 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업과 관련한 상담, 작업치료(作業治療),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의 복지 욕구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 수요자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 시설이 균형 있게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과 민간부문의 사회복지 증진활동이 원활하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는 방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복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긴급한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경우 신속히 대응할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 거주자의 희망을 반영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에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2019. 1. 15.>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26.>

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사람을 위하여 간이하고 신속한 구제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2. 1. 26.]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7. 10. 2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0. 24.>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2. 1. 26.]

제10조(지도·훈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인권교육 등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② 제1항의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8.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그 소속 기관·단체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제42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구제조치의 이행
2.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 3. 21., 2022. 1. 4.> [전문개정 2011. 5. 19.] [시행일: 2022. 7. 1.] 제44조

제45조(고발 및 징계권고) ①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등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2. 1. 4.>

② 위원회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5. 19.] [시행일: 2022. 7. 1.] 제45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9조(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① 시설수용자가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보내는 진정서 그밖의 서면의 작성의사를 표명한 때에는 구금·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를 금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위원회에 보내기 위하여 작성

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진정서 또는 서면을 열람·압수 또는 폐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작성의사를 표명하지 아니하고 작성중이거나 소지하고 있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금·보호시설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시설수용자가 징벌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벌을 받고 있는 중이라는 이유로 위원회에 보내기 위한 진정서 또는 서면을 작성하거나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24., 2017. 10. 31.>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 ④ (생략)

⑤ 제6조에 따라 공익신고를 접수한 기관의 종사자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③ (생략)

④ 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사람의 징계권자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제13조(신변보호조치)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신변보호조치”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①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 4. 20.>
-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4. 20.>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보호조치 신청) ①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공익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를 준비하다가 불이익조치를 받은 후 공익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 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보호조치결정 등)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는 제외한다)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는 결정(이하 “보호조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호조치 요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기각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원상회복 조치
2.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滯拂)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
3.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

② ~ ⑥ (생략)

제20조의2(특별보호조치) ① 내부 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위원회는 보호조치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보호조치결정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7. 24.]

제21조의2(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그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8. 4. 17.>

② ~ ⑦ (생략)

제24조(화해의 권고 등) ① 위원회는 보호조치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조치결정, 기각결정 또는 권고를 하기 전까지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보호조치와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들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② 위원회는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 ③ 관계 당사자가 위원회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와 화해에 참여한 위원회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7조(구조금) ①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은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제2조제6호아목 및 자목은 제외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31., 2021. 4. 20.>
- ③ 위원회는 구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구조금 지급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을 조사하거나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 또는 관련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금액의 범위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⑤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피해 또는 비용 지출을 원인으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제29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 불이익조치의 유형·기간·횟수 등
 6. 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본조신설 2017. 10. 31.]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가목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제6호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제3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5. 7. 24.]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용 점검표

- 아동학대 징후 체크리스트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무 중에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 활용
- 1개 문항 이상 “예”라고 체크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 아동학대가 “의심” 되면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로 반드시 신고

연번	평가항목	평가 ✓	
1	사고로 보이기에는 미심쩍은 상흔이나 폭행으로 보이는 멍이나 상처가 발생한다.	예	아니오
2	상처 및 상흔에 대한 아동 및 보호자의 설명이 불명확하다.	예	아니오
3	보호자가 아동이 매를 맞고 자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체벌을 사용한다.	예	아니오
4	아동이 보호자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한다.	예	아니오
5	아동이 보호자에게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당한다.	예	아니오
6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를 보인다.	예	아니오
7	계절에 맞지 않는 옷, 청결하지 못한 외모를 보인다.	예	아니오
8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서부터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방치한다.	예	아니오
9	성학대로 의심될 성 질환이 있거나 임신 등의 신체적 흔적이 있다.	예	아니오
10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 및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을 보인다.	예	아니오
11	자주 결석하거나 결석에 대한 사유가 불명확하다.	예	아니오
12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이 필요한 아동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는다.	예	아니오
13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과 두려움을 표현하거나 집(보호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예	아니오
14	아동이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을 보이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모습 등의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	예	아니오
15	“아동학대 점검표” 1-14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그 외의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학대 의심 사항 :)	예	아니오

□ 1개 문항 이상 “예” 라고 평가된 경우, 아동학대를 의심해 볼 수 있으므로 ☎ 112로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점검표」는 학대로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상담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점검·신분증 및 임명현황 보고 양식

4-1.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점검 양식

(시설명 :)

점검일시	점검 장소	점검내용	점검 결과 특이 사항		
			아동학대 징후	인권보호 관련 개선필요 사항	기타
지자체 관계자 의견					

-
-

지자체 관계자 확인		
담당	팀장	과장

4-2.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신분증 양식

〈 전 면 〉

인권보호관증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padding: 2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사진</p> </div>	
지자체 마크	지자체명

〈 후 면 〉

인권보호관증번호 : 동작구 00-00	
<p>소속 : 동작경찰서</p> <p>직위/직급 : 경정</p> <p>성명 : 김철수</p> <p>생년월일 : 1979.3.12</p> <p>담당시설명 : 하늘보육원</p> <p>위촉기간 : 0000.00.00 ~ 0000.00.00</p> <p style="text-align: right;">2017.00.00</p>	
지자체 마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인)

4-3. 아동복지시설 인권보호관 지정·임명 결과 보고 양식

● 임명대상 시설 : 아동양육·아동보호치료·아동일시보호시설

(시·도명 :)

시·군·구별	시설별	인권보호관 임명일	인권보호관 활동일	임명된 인권보호관의 직업
00 시(군·구)			
			
			
00 시(군·구)			
			
			
00 시(군·구)			
			
			
00 시(군·구)			
			
			
00 시(군·구)			
			
			
.	.			
.	.			
.	.			
.	.			
.	.			
계	○ 인권보호관 임명대상 시설 : 총 00개(A) ○ 인권보호관이 임명된 시설 : 00개(B) ○ 인권보호관이 미임명된 시설 : 00개(B) ○ 인권보호관 임명률 : %(B/A) ○ 인권보호관이 미임명된 시설별 사유 : - ... 시설 : ○ 인권보호관 미임명된 조치 완료 예정일 :			

5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안내

1.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교도소, 구치소, 보호 및 치료감호소 등의 구금시설과 장애인·노인·아동·외국인 등이 수용되어 있는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진정을 받습니다.
2.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자 할 경우, 시설에서는 진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진정서 작성을 허가하지 않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3. 누구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이나 진술, 증언 등을 했다는 이유로 시설로부터 부당한 대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4. 국가인권위원회는 구금·보호시설의 수용자에게 발생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을 접수합니다.

- 우 편 :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자유롭게 편지를 써 보내십시오.
04551 서울시 중구 삼일대로 340 나라키움 저동빌딩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조정센터
- 전 화 : 전국 어디에서든 국번없이 1331
- 팩 스 : 02) 2125-9811
- 인터넷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

아동권리 보호를 위하여 미디어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기본원칙

1.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 존중

미디어 활동의 전 과정에서 모든 아동과 보호자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2. 미디어 관계자의 사명과 책무 준수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과 관련한 문제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미디어 활동이 아동의 권리 신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이 당면한 문제의 구조적 원인과 맥락까지 파악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3. 아동 및 보호자의 의사 존중

촬영 전에 반드시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사전 동의는 아동 및 보호자가 촬영자나 다른 누군가에게 간섭이나 유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져야 하며, 촬영자는 이들에게 자신의 신분 및 촬영의 목적과 활용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은 촬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아야 합니다.

4. 아동의 사생활 보호

아동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관계자는 촬영 과정과 보도 이후까지 아동의 신변 보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5. 적절한 촬영 환경 보장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절한 촬영 환경을 보장해야 합니다. 촬영 관계자와 촬영의 대상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6. 촬영으로 인한 사후 피해 예방

보도 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도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파급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 대상 아동의 상황에 대해 보도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7. 사실에 기반을 둔 촬영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이 당면한 상황과 아동의 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아동의 정보와 촬영 결과물을 특정한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아야 합니다.

8. 아동 및 보호자의 능동적 묘사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과 보호자를 무기력한 수혜자가 아니라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능동적 주체로 묘사해야 합니다.

9. 현지 지역 문화의 존중

미디어 관계자는 아동이 속한 현지 지역사회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고 현지 문화의 관점에서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합니다.

10. 국내외 협력기관 및 직원 존중

한국의 협력 기관과 촬영 국가 내 동행하는 현지 기관 직원 등 미디어 활동의 협력 파트너를 존중해야 합니다.

※ 출처: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

7 종사자 스트레스 자가 진단

생활 속의 스트레스 대응 요령

1. 주위 사람을 잘 활용한다. 자신에게 우호적인 가족, 친구, 지인, 회사동료와의 대화를 통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킨다.
2. 취미활동, 명상, 여가활동 등을 통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스트레스 요인을 감쇄시킨다.
3.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한다.
4. 적극적으로 스트레스 발생원인 제거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5.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의 역할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슈퍼바이저를 만들어 문제해결력을 증진시킨다.
6. 자신에게 오는 스트레스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

분노조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방 법	내 용
생각 중단하기	지금 자신이 갖는 분노 감정이 과연 관심을 줄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신이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화를 내게 한 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응책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 그리고는 “그만 멈춰!!” 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속으로 외치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할 것인지를 정한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 적대적인 생각이나 감정이나 충동이 사라졌거나 관심 밖에 있게 되면 그럴 수 있는 자신을 칭찬한다.
관심 바꾸기	화가 나는 순간에 덜 성가신 것, 예를 들면 잡비, 라디오 프로그램, 사람 관찰하기 또는 공상하기 등 관심을 순간적으로 다른 곳에 돌려서 잠시 벗어나 본다. 때때로 효과적이다.
이완하기와 명상하기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숨을 쉬면서 정신을 집중한다. 숨을 내 쉴 때마다. 마음을 편하게 해 주는 단어나 문구를 반복해서 말한다.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이완과 명상을 계속한다. 집중이 어려우면 단순히 숨쉬는 것에만 집중해도 좋다.
근육이완	몸의 긴장을 풀어 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는 운동을 한다.
자극제를 피하기	가능한 담배를 끊고 카페인 많은 음료나 단 음식물의 섭취는 최대한 줄이고 과음과 과식도 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다.
사회봉사활동 하기	자원봉사 단체를 한 곳 정해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한다. 이런 경험은 보람과 인내를 키우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공감하기	상대가 하는 행동의 동기에 대한 자신의 판단이 많은 경우에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8 성인 우울 자가선별검사

※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일어났었는지 ○해 주십시오. / 점수()

0. 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 1. 가끔 있었다. (일주일 동안 1일에서 2일간)
 2. 종종 있었다. (일주일 동안 3일에서 4일간) 3. 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동안 5일 이상)

1.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text-align: center;">0</td><td>나는 슬프지 않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td><td>나는 슬프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td><td>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td><td>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td></tr> </table>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0	나는 슬프지 않다.									
1	나는 슬프다.									
2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3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2.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text-align: center;">0</td><td>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td><td>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td><td>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td><td>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td></tr> </table>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0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1	나는 앞날에 대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									
2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느낀다.									
3	나의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text-align: center;">0</td><td>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td><td>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td><td>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td><td>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td></tr> </table>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3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0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보통사람들보다 더 많이 실패한 것 같다.									
2	내가 살아온 과거를 뒤돌아보면, 실패투성이인 것 같다.									
3	나는 인간으로 완전한 실패자라고 느낀다.									
4.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text-align: center;">0</td><td>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td><td>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td><td>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td><td>나는 매사가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td></tr> </table>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1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다.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매사가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다.									
1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이 즐겁지 않다.									
2	나는 더 이상 어떤 것에서도 만족을 얻지 못한다.									
3	나는 매사가 다 불만스럽고 지겹다.									
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text-align: center;">0</td><td>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td><td>나는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td><td>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td><td>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td></tr> </table>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2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0	나는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종종 죄책감을 느낀다.									
2	나는 자주 죄책감을 느낀다.									
3	나는 항상 죄책감을 느낀다.									
6.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text-align: center;">0</td><td>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td><td>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td><td>나는 내가 앞으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td><td>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td></tr> </table>	0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2	나는 내가 앞으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0	나는 내가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2	나는 내가 앞으로 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한다.									
3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7.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text-align: center;">0</td><td>나는 내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td><td>나는 내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td><td>나는 내자신이 싫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td><td>나는 내자신을 증오하고 있다.</td></tr> </table>	0	나는 내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내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내자신이 싫다.	3	나는 내자신을 증오하고 있다.	
0	나는 내자신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다.									
1	나는 내자신에 대해 실망하고 있다.									
2	나는 내자신이 싫다.									
3	나는 내자신을 증오하고 있다.									
8.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 style="text-align: center;">0</td><td>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않는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1</td><td>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내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2</td><td>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자신을 질책한다.</td></tr> <tr><td style="text-align: center;">3</td><td>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하여 내 자신을 질책한다.</td></tr> </table>	0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내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2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자신을 질책한다.	3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하여 내 자신을 질책한다.	
0	나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나의 약점이나 실수에 대하여 내자신을 비판하는 편이다.									
2	나는 나의 잘못에 대해 항상 내자신을 질책한다.									
3	나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모든 일에 대하여 내 자신을 질책한다.									

9.	<table border="1"> <tr> <td>0</td> <td>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td> </tr> <tr> <td>1</td> <td>나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다.</td> </tr> <tr> <td>2</td> <td>나는 자살하고 싶다.</td> </tr> <tr> <td>3</td> <td>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td> </tr> </table>	0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1	나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0	나는 자살할 생각 같은 것은 하지 않는다.									
1	나는 행동에 옮기지는 않지만 자살할 생각을 갖고 있다.									
2	나는 자살하고 싶다.									
3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10.	<table border="1"> <tr> <td>0</td> <td>나는 전보다 더 자주 울지 않는다.</td> </tr> <tr> <td>1</td> <td>나는 요즘 전보다 자주 운다.</td> </tr> <tr> <td>2</td> <td>나는 요즘 항상 운다.</td> </tr> <tr> <td>3</td> <td>나는 너무 울어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td> </tr> </table>	0	나는 전보다 더 자주 울지 않는다.	1	나는 요즘 전보다 자주 운다.	2	나는 요즘 항상 운다.	3	나는 너무 울어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	
0	나는 전보다 더 자주 울지 않는다.									
1	나는 요즘 전보다 자주 운다.									
2	나는 요즘 항상 운다.									
3	나는 너무 울어 이제는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나온다.									
11.	<table border="1"> <tr> <td>0</td> <td>나는 전보다 더 자주 화를 내지는 않는다.</td> </tr> <tr> <td>1</td> <td>나는 전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다.</td> </tr> <tr> <td>2</td> <td>나는 요즘 항상 짜증스럽다.</td> </tr> <tr> <td>3</td> <td>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인데도 이젠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td> </tr> </table>	0	나는 전보다 더 자주 화를 내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다.	2	나는 요즘 항상 짜증스럽다.	3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인데도 이젠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0	나는 전보다 더 자주 화를 내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신경질적이고 짜증스럽다.									
2	나는 요즘 항상 짜증스럽다.									
3	전에는 짜증스럽던 일인데도 이젠 짜증조차 나지 않는다.									
12.	<table border="1"> <tr> <td>0</td> <td>나는 전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td> </tr> <tr> <td>1</td> <td>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td> </tr> <tr> <td>2</td> <td>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td> </tr> <tr> <td>3</td> <td>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td> </tr> </table>	0	나는 전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	3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	
0	나는 전처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1	나는 전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줄었다.									
2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어졌다.									
3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어졌다.									
13.	<table border="1"> <tr> <td>0</td> <td>나는 전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td> </tr> <tr> <td>1</td> <td>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룬다.</td> </tr> <tr> <td>2</td> <td>나는 전보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td> </tr> <tr> <td>3</td> <td>나는 더이상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td> </tr> </table>	0	나는 전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1	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룬다.	2	나는 전보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3	나는 더이상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0	나는 전처럼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다.									
1	나는 전에 비해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고 뒤로 미룬다.									
2	나는 전보다 어떤 일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3	나는 더이상 어떤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									
14.	<table border="1"> <tr> <td>0</td> <td>나는 전보다 내 모습(외모)이 추해졌다고 느끼지 않는다.</td> </tr> <tr> <td>1</td> <td>나는 내가 나이 들고 매력 없게 보일까봐 걱정한다.</td> </tr> <tr> <td>2</td> <td>이젠 남에게 매력을 주지 못할 만큼 내모습이 변했다.</td> </tr> <tr> <td>3</td> <td>나는 내가 못 생겼다고 생각한다.</td> </tr> </table>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외모)이 추해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나이 들고 매력 없게 보일까봐 걱정한다.	2	이젠 남에게 매력을 주지 못할 만큼 내모습이 변했다.	3	나는 내가 못 생겼다고 생각한다.	
0	나는 전보다 내 모습(외모)이 추해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1	나는 내가 나이 들고 매력 없게 보일까봐 걱정한다.									
2	이젠 남에게 매력을 주지 못할 만큼 내모습이 변했다.									
3	나는 내가 못 생겼다고 생각한다.									
15.	<table border="1"> <tr> <td>0</td> <td>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td> </tr> <tr> <td>1</td> <td>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td> </tr> <tr> <td>2</td> <td>어떤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들다.</td> </tr> <tr> <td>3</td> <td>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td> </tr> </table>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2	어떤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들다.	3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0	나는 전과 다름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									
1	어떤 일을 시작하려면 전보다 더 힘이 든다.									
2	어떤 일을 하기가 무척 힘들다.									
3	나는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다.									
16.	<table border="1"> <tr> <td>0</td> <td>나는 전처럼 잘 잔다.</td> </tr> <tr> <td>1</td> <td>나는 전처럼 잘 자지 못한다.</td> </tr> <tr> <td>2</td> <td>나는 전보다 한두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td> </tr> <tr> <td>3</td> <td>나는 전보다 몇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td> </tr> </table>	0	나는 전처럼 잘 잔다.	1	나는 전처럼 잘 자지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한두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3	나는 전보다 몇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0	나는 전처럼 잘 잔다.									
1	나는 전처럼 잘 자지 못한다.									
2	나는 전보다 한두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기가 어렵다.									
3	나는 전보다 몇 시간 일찍 잠을 깨며 다시 잠들 수가 없다.									
17.	<table border="1"> <tr> <td>0</td> <td>나는 전보다 더 피곤을 느끼지는 않는다.</td> </tr> <tr> <td>1</td> <td>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을 느낀다.</td> </tr> <tr> <td>2</td> <td>나는 거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피곤을 느낀다.</td> </tr> <tr> <td>3</td> <td>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td> </tr> </table>	0	나는 전보다 더 피곤을 느끼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을 느낀다.	2	나는 거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피곤을 느낀다.	3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0	나는 전보다 더 피곤을 느끼지는 않는다.									
1	나는 전보다 더 쉽게 피곤을 느낀다.									
2	나는 거의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피곤을 느낀다.									
3	나는 너무 피곤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18.	0	내 식욕은 전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1	내 식욕은 전처럼 좋지 않다.
	2	내 식욕은 요즘 매우 좋지 않다.
	3	요즘은 전혀 식욕이 없다.
19.	0	나는 요즘 몸무게가 줄지 않았다.
	1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조금 줄었다.
	2	나는 전보다 몸무게가 많이 줄었다.
	3	나는 몸무게가 너무 많이 줄어 건강에 위협을 느낄 정도다.
20.	0	나는 전보다 건강에 대해 더 신경 쓰지는 않는다.
	1	나는 두통, 소화불량, 변비 등으로 건강에 신경이 쓰인다.
	2	나는 건강에 신경이 많이 쓰여 다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3	나는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대해 걱정이 심하다.
21.	0	나는 요즘도 성(性)에 대한 관심에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
	1	나는 전보다 성(性)에 대한 관심이 적어졌다.
	2	나는 요즘 성(性)에 대한 관심이 현저하게 줄었다.
	3	나는 성(性)에 대한 흥미를 완전히 잃어 버렸다.

● **결 과**

점 수	결 과	비 고
10점	정 상	-
10~16점	경 중 우 울	-
17~29점	중 등 도 우 울	전문가 정신건강상담 필요
30점 이상	중 중 우 울	전문의 상담 및 진료 필요

(출처 :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자가테스트'에서 발췌)

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 양식 (아동복지시설 → 지자체 보고 양식)

시설 또는 기관명			
소재지 (시·도 및 시·군·구)		시설장 또는 기관장 성명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대상	기관 내 신고의무자수	이수인원	신고의무자 중 교육이수인원
이수시간	교육실시 시간	교육방법	집체교육, 사이버교육 등

<증빙자료>

교육 방법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첨부

- ※ (집체교육) 현장사진 및 교육 참석자 서명을 첨부
 집합교육 및 시청각교육: 아동권리보장원 교육 자료 활용한 경우
- ※ (사이버 교육) 이수증 첨부
 사이버 교육: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포털 등

10

아동 대상 안전 및 인권 교육 결과보고 양식 (아동복지시설 → 지자체 보고 양식)

교육 실시 결과

● 교육대상 000 명 대비 000명 참석 참석률 00%

구 분	일시	장소	교육강사	교육내용	참석대상	참석률
초등생				* 간단하게 내용을 적고 세부내용 "붙임3"로 처리		
중학생				"		
고교생				"		
비재학자				"		
대학이상				"		

향후 계획

● 안전 및 인권 관련하여 시설 차원의 향후 추진계획을 기재

별도 붙임 자료

1. 0000시설의 2022년도 아동대상 안전 및 인권 교육 실시 계획서
2. 교육대상별 교육실시 내용
3. 교육 강사 현황(강사 이력 및 프로필)
4. 교육 강사별 강의계획서. 끝.

12

시·군·구 아동학대 신고 관련 긴급전화 설치 현황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1	서울	강남구	02-545-1391
2		강동구	02-3425-8877
3		강북구	02-998-1391
4		강서구	02-2600-5433
5		관악구	02-879-6199
6		광진구	02-450-1474
7		구로구	02-2620-7391
8		금천구	02-2627-2391
9		노원구	02-974-1391
10		도봉구	02-2091-2391
11		동대문구	02-2127-5640
12		동작구	02-3280-1392
13		마포구	02-3153-8391
14		서대문구	02-330-1391
15		서초구	02-2155-8910
16		성동구	02-2286-6633
17		성북구	02-2241-2662
18		송파구	02-2147-2391
19		양천구	02-2620-3391
20		영등포구	02-2670-1391
21		용산구	02-2199-7139
22		은평구	02-733-1391
23		종로구	080-860-1391
24		중구	02-2261-1391
25		중랑구	02-2094-1391
26	부산	중구	051-466-1391
27		동구	051-440-4848
28		서구	051-241-1391
29		사하구	051-292-1391
30		영도구	051-416-1391
31		동래구	051-553-1391
32		남구	051-607-3400
33		연제구	051-851-1391
34		부산진구	051-803-1391
35		금정구	051-518-1391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36		해운대구	051-781-1391
37		수영구	051-611-1391
38		기장군	051-722-1391
39		북구	051-302-1391
40		사상구	051-310-5112
41		강서구	051-974-1391
42	대구	중구	053-661-1391
43		남구	053-472-1391
44		수성구	053-666-1391
45		달서구	053-631-1391
46		달성군	053-262-1391
47		동구	053-956-1391
48		북구	053-351-1391
49		서구	053-566-1391
50	인천	중구	032-751-1391
51		동구	032-777-1391
52		미추홀구	032-881-1391
53		부평구	032-509-1391
54		옹진군	032-883-1391
55		서구	032-565-1391
56		계양구	032-549-1391
57		강화군	032-933-1391
58		남동구	032-472-1391
59		연수구	032-813-1391
60	광주	북구	062-515-1391
61		동구	062-608-8820
62		남구	062-671-1391
63		서구	062-601-0391
64		광산구	062-941-1391
65	대전	동구	042-285-1391
66		중구	042-222-1391
67		서구	042-471-1391
68		유성구	042-863-1391
69		대덕구	042-626-1391
70	울산	중구	052-292-1391
71		동구	052-235-1391
72		북구	052-289-1391
73		남구	052-261-1391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74	경기	울주군	052-204-1391
75		과천시	02-3418-1391
76		군포시	031-397-1391
77		의왕시	031-455-1391
78		의정부시	031-828-2112
79		양주시	031-8082-5848
80		동두천시	031-858-1391
81		연천군	031-834-1391
82		포천시	031-532-1391
83		성남시	031-722-1391
84		광주시	031-760-1799
85		하남시	010-9285-1391
86		양평군	031-771-1391
87		고양시	031-966-1391
88		파주시	080-500-1391
89		김포시	031-980-2278
90		부천시	032-625-3868
91		화성시	031-5189-1391
92		오산시	031-374-1391
93		구리시	031-558-1391
94		남양주시	031-579-6700
95		가평군	031-581-1391
96		안산시	031-481-3319
97		용인시	031-324-2915
98		이천시	031-645-3649
99		여주시	031-883-4-1391
100		시흥시	031-312-1391
101		평택시	031-652-1391
102		안성시	031-676-1391
103		수원시	031-226-1391
104		광명시	02-2681-1391
105		안양시	031-383-1391
106	강원	춘천시	033-250-3683
107		원주시	033-737-2590
108		강릉시	033-648-1391
109		동해시	033-530-2980
110		태백시	033-552-1391
111		속초시	033-639-3894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112		삼척시	033-573-1392	
113		홍천군	033-430-2138	
114		횡성군	033-342-1391	
115		영월군	033-370-1391	
116		평창군	033-330-1381	
117		정선군	033-560-2988	
118		철원군	010-6717-1391	
119		화천군	033-442-1391	
120		양구군	010-6818-1391	
121		인제군	036-462-1391	
122		고성군	033-644-1391	
123		양양군	033-671-1391	
124		충북	청주시	043-201-1391
125			충주시	043-842-1391
126	제천시		043-643-1391	
127	보은군		043-542-1391	
128	옥천군		043-733-1391	
129	영동군		043-742-1391	
130	증평군		043-836-3391	
131	진천군		043-537-1391	
132	괴산군		043-832-1391	
133	음성군		043-872-1391	
134	단양군		043-421-1391	
135	충남	천안시	041-566-1391	
136		아산시	041-533-1391	
137		당진시	041-358-1391	
138		금산군	041-751-1391	
139		공주시	041-853-1391	
140		논산시	041-736-1391	
141		계룡시	042-840-3697	
142		부여군	041-834-1391	
143		서천군	041-952-1391	
144		예산군	041-331-1391	
145		청양군	041-943-1391	
146		홍성군	041-635-1391	
147		보령시	041-931-1391	
148		서산시	041-662-1391	
149		태안군	041-673-1391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150	세종	세종시	02-3418-1391
151	전북	전주시	063-285-1391
152		완주군	063-241-1391
153		진안군	063-432-1391
154		정읍시	063-536-1391
155		익산시	063-843-1391
156		군산시	063-451-1391
157		김제시	063-540-1391
158		부안군	063-584-1391
159		고창군	063-564-1391
160		임실군	063-644-1391
161		무주군	063-324-1391
162		남원시	063-626-1391
163		순창군	063-653-1391
164		장수군	063-350-2127 010-4035-1391
165	전남	곡성군	061-360-8253
166		순천시	061-746-1391
167		구례군	061-781-1391
168		광양시	061-791-1391
169		보성군	061-852-1391
170		고흥군	061-832-1391
171		여수시	061-659-5367
172		영암군	061-472-1391
173		강진군	061-433-1391
174		목포시	061-276-1391
175		무안군	061-452-1390
176		신안군	061-262-1391
177		해남군	061-537-1391
178		완도군	061-555-1391
179		진도군	061-540-1391
180		영광군	061-353-1391
181		장성군	061-395-1391
182		담양군	061-380-2833
183	화순군	061-371-1391	
184	나주시	061-331-1391	
185	함평군	061-322-1391	
186	장흥군	061-863-1391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187	경북	경산시	053-812-1391
188		청도군	054-373-1391
189		군위군	054-380-6403
190		의성군	054-832-1391
191		영천시	054-334-1391
192		경주시	054-777-1391
193		문경시	054-552-1391
194		영주시	010-8937-1391 010-3597-1392
195		봉화군	054-674-1391
196		예천군	054-654-1391
197		안동시	054-840-6533
198		영양군	054-680-6296
199		청송군	054-873-1391
200		영덕군	054-730-6247
201		울진군	010-7380-1391 010-7480-1391
202		포항시	054-270-1391
203		울릉군	054-790-6212
204		고령군	054-956-1391
205		칠곡군	054-971-1391
206		성주군	054-932-1391
207	구미시	054-452-1391	
208	김천시	054-431-1391 010-9694-1391 010-9695-1391	
209	상주시	054-537-7659	
210	경남	양산시	055-382-1391
211		밀양시	055-356-1391
212		창원시	055-263-1391
213		창녕군	055-533-1391
214		의령군	055-572-1391
215		함안군	055-585-1391
216		고성군	055-674-1391
217		통영시	055-650-1391
218		거제시	055-633-1391
219		합천군	055-933-1391 010-4378-1391
220	진주시	055-745-1391	

연번	시·도명	시·군·구명	긴급전화 번호
221		사천시	055-832-1391
222		산청군	055-970-6391
223		하동군	055-884-1391
224		남해군	055-862-1391
225		거창군	055-945-1391
226		함양군	055-964-1391
227		김해시	055-359-1391
228	제주	제주시	064-728-2670
229		서귀포시	064-760-0911

13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연번	시·도명	기관명	관할 시·군·구	기관전화번호
1	서울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	02-2040-4242
2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대문구, 종량구, 광진구, 성동구, 중구	02-2247-1391
3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양천구	02-3665-5183~5
4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은평구, 종로구	02-3157-1391
5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02-842-0094
6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성북구, 도봉구, 강북구	02-923-5440
7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02-422-1391
8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강남구, 강동구, 관악구, 동작구, 서초구, 송파구	02-474-1391
9		서울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노원구	02-974-1391
10	부산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아동보호종합센터)	부산광역시	051-240-6300
11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남구, 기장군	051-715-1391
12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서구, 사상구, 북구	051-711-1391
13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서구, 연제구, 영도구, 부산진구, 사하구, 동래구	051-791-1360
14	대구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 수성구, 중구	053-422-1391
15		대구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달서구, 달성군	053-623-1391
16		대구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북구, 서구	053-710-1391
17	인천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미추홀구, 동구, 중구, 옹진군	032-434-1391
18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평구, 계양구	032-515-1391
19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동구, 연수구	032-424-1391
20		인천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강화군	032-563-1391
21	광주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구, 광산구	062-385-1391
22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남구, 북구	062-675-1391
23	대전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대덕구	042-254-6790
24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유성구, 서구	042-716-2020
25	울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중구, 동구, 북구	052-245-9382
26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남구, 울주군	052-256-1391
27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044-864-1393
28	경기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031-245-2448
29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의정부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	031-874-9100

연번	시·도명	기관명	관할 시·군·구	기관전화번호	
30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성남시, 하남시	031-756-1391	
31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고양시	031-966-1391	
32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김포시, 부천시	032-662-2580	
33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오산분소포함)	화성시, 오산시	031-227-1310 031-8077-9610	
34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남양주시, 가평군	031-592-9818	
35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산시	031-402-0442	
36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용인시, 이천시, 여주시	031-275-6177	
37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시흥시	031-316-1391	
38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평택시, 안성시	031-652-1391	
39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수원시	031-8009-0080	
40		광명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광명시	02-897-1577	
41		안양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안양시	031-468-9821	
42		구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구리시	031-523-3163	
43		군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군포시	031-8042-7395	
44		경기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시, 양평군	031-8027-0171	
45		경기의왕아동보호전문기관	과천시, 의왕시	031-360-1391	
46		파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파주시	031-839-0940	
47		강원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춘천, 화천, 홍천, 양구, 철원	033-244-1391
48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인제군, 고성군	033-644-1391
49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원주시, 영월군, 평창군, 횡성군	033-766-1391
50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동해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033-535-5391	
51		충북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 음성군, 진천군, 증평군	043-216-1391
52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43-643-0943
53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043-731-3685
54		충남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천안시	041-578-2655
55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논산시, 계룡시, 공주시,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041-734-6640
56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산시,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청양군	041-635-1106	
57	충청남도중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아산시, 당진시	041-546-1391	
58	전북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김제시, 부안군, 정읍시, 고창군, 순창군, 장수군	063-283-1391	
59		전라북도익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익산시	063-852-1391	
60		전라북도남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남원시	063-635-1391	
61		전북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군산시	063-734-1391	

연번	시·도명	기관명	관할 시·군·구	기관전화번호
62		전라북도전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완산구, 덕진구	063-715-1371
63	전남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고흥군, 구례군, 곡성군	061-753-5125
64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무안분소포함)	목포시, 신안군, 영암군, 무안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061-285-1391
65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나주시, 함평군, 영광군	061-332-1391
66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화순군, 보성군, 장흥군, 담양군, 장성군	061-870-7200
67	경북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주시,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도군	054-745-1391
68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안동시, 영주시, 문경시, 예천군, 봉화군, 영양군	054-853-1391
69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청송군, 울릉군	054-284-1391
70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구미시, 김천시, 상주시, 성주군, 칠곡군, 고령군	054-455-1391
71	경남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남 거제분소 포함)	밀양시, 통영시, 고성군, 창녕군, 함안군, 의령군	055-244-1391
			거제시	055-635-9752
72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진주시, 사천시, 남해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하동군, 합천군	055-757-1391
73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김해시	055-322-1391
74		양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시	055-367-1397
75		창원시아동보호전문기관	창원시	055-713-1390
7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시	064-712-1391
77		서귀포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	064-732-1391

14 정신건강복지센터 현황

시도	사군구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서울		광역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종로구 동송3길 40 일석기념관 3,4층	02-3444-9934
서울	강남구	기초	강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남구 일원로 9길 38, 3층	02-2226-0344
서울	강동구	기초	강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동구 성내로 45, 1층	02-471-3223
서울	강북구	기초	강북구정신건강증진센터	강북구 삼양로 19길, 154, 3층	02-985-0222
서울	강서구	기초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서구 공항대로 561, 강서구보건소 B1	02-2600-5926
서울	관악구	기초	관악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관악구 관악로 145, 4층	02-879-4911
서울	광진구	기초	광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광진구 긴고랑로 110, 종곡종합건강센터 4층	02-450-1895
서울	구로구	기초	구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구로구 새말로 60, 제중요양병원 별관 지하 1층	02-861-2284
서울	금천구	기초	금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금천구 시흥대로 123길 11, 5층	02-3281-9314
서울	노원구	기초	노원구정신건강복지센터	노원구 노해로 455	02-2116-4591
서울	도봉구	기초	도봉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도봉구 방학로 3길 117, 1층	02-2091-5231
서울	동대문구	기초	동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대문구 홍릉로 81, 홍릉문화복지센터 4층	02-963-1621
서울	동작구	기초	동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작구 사당로 253-3	02-820-4072
서울	마포구	기초	마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마포구 성산로 4길 15, 3층	02-3272-4937
서울	서대문구	기초	서대문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대문구 연희로 290, 서대문보건소 별관 4층	02-3140-8081
서울	서초구	기초	서초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초구 염곡말길 9, 느티나무쉼터 3층	02-2155-8215
서울	성동구	기초	성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성동구 행당로 12, 3층	02-2298-1080
서울	성북구	기초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성북구 화랑로 63	02-2241-6314
서울	송파구	기초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02-2147-5030
서울	양천구	기초	양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양천구 목동서로 339, 지하 1층	02-2061-8881
서울	영등포구	기초	영등포구정신건강복지센터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보건소 4층	02-2670-4793
서울	용산구	기초	용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02-2199-8340
서울	은평구	기초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	은평구 연서로 34길 11	02-351-8680
서울	종로구	기초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종로구 성균관로 15길 10	02-745-0199
서울	중구	기초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 서소문로 6길 16, 3층	02-2236-6606
서울	중랑구	기초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랑구 면목로 238	02-3422-5921
부산		광역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남구 수영로 299 루미너스타워 12층	051-242-2575
부산	강서구	기초	강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강서구 공항진입로 8, 2층(주제이슨건물)	051-973-3418
부산	금정구	기초	금정구정신건강복지센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금정구청 별관 5층	051-518-8700

시도	시군구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부산	기장군	기초	기장군정신건강복지센터	기장군 정관읍 용수로 11, 정관보건지소 4층	051-727-5386
부산	남구	기초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남구 유엔평화로 4번길 61, 2-3층	051-626-4660
부산	동구	기초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구 구청로 1, 의회동 2층	051-911-4600
부산	동래구	기초	동래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래구 명륜로 187번길 56	051-507-7306
부산	부산진구	기초	진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부산진구 시민공원로 30, 부산진구청 별관 건강증진센터 내 2층	051-638-2662
부산	북구	기초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북구 만덕대로 89번길 9, 덕천보건지소 3층	051-334-3200
부산	사상구	기초	사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상구 가야대로 196번길 51, 3층(학장동, 다누림센터)	051-314-4101
부산	사하구	기초	사하구정신건강복지센터	사하구 장림변영로 41, 한국메디컬빌딩 5F	051-265-0512
부산	서구	기초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구 부용로 30, 202호	051-246-1981
부산	수영구	기초	수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수영구 수영로 637-5	051-714-5681
부산	연제구	기초	연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연제구 연제로 2, 연제구보건소 2층	051-861-1914
부산	영도구	기초	영도구정신건강복지센터	영도구 동삼북로 2, 주택공사영구 임대아파트 상가 209호~211호	051-404-3379
부산	중구	기초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 흑교로 48, 3층	051-257-7057
부산	해운대구	기초	해운대구정신건강복지센터	해운대구 양운로 37번길 59, 해운대구보건소 305호	051-741-3567
대구		광역	대구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서구 평리로 157, 대구의료원 생명존중센터 3층	053-256-0199
대구	남구	기초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남구 영선길 34, 남구보건소 4층	053-628-5863
대구	달서구	기초	달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달서구 학산로 50, 월성문화관 내	053-637-7852
대구	달성군	기초	달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458길 6-2, 3층	053-643-0199
대구	동구	기초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구 동촌로 79, 동구보건소 4층	053-983-8340
대구	북구	기초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북구 성북로 43, 4층	053-353-3631
대구	서구	기초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구 북비산로 71길 7	053-564-2595
대구	수성구	기초	수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수성구 수성로 213, 수성구보건소 별관 4층	053-756-5860
대구	중구	기초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 태평로 45, 중구보건소 3층	053-256-2900
인천		광역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남동구 남동대로 774번길 24 가천뇌과학연구소 5층	032-468-9911
인천	강화군	기초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강화군 강화읍 총렬사로 26-1	032-932-4390
인천	계양구	기초	계양구정신건강복지센터	계양구 장기서로 8, 장기보건지소 3층	032-547-7087
인천	남동구	기초	남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남동구 인주대로 819, 문화빌딩 6층	032-465-6412
인천	동구	기초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구 인중로 377, 2층	032-765-3690
인천	미추홀구	기초	미추홀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미추홀구 독정리로 95, 미추홀구청 본관 3층사 2층	032-421-4045
인천	부평구 (평전)	기초	삼산정신건강복지센터	부평구 평천로 447	032-330-1371
인천	부평구 (부흥)	기초	부평정신건강복지센터	부평구 부흥로 287, 부평구보건소 별관 2층	032-330-5602

시도	시군구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인천	서구	기초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구 탁옥로 39, 4층	032-560-5006
인천	연수구	기초	연수구정신건강복지센터	연수구 예술로 20번길 15, 기억과마음치매정신통합센터 3층	032-899-9430
인천	옹진군	기초	옹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미추홀구 120(옹현동), 옹진군보건소 3층	032-721-0560
인천	중구	기초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 참외전로 72번길 21	032-760-6090
광주		광역	광주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동구 제봉로 27 한일빌딩 5층	062-600-1930
광주	광산구	기초	광산구정신건강복지센터	광산구 상무대로 239-1, 3층	062-941-8567
광주	남구	기초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남구 봉선로 1	062-676-8236
광주	동구	기초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구 서남로 1, 동구보건소 2층	062-233-0468
광주	북구	기초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북구 북문대로 43, 2층	062-267-5510
광주	서구	기초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구 운천로 172번길 32,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2층	062-365-5900
대전		광역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 대종로 488번길 9	042-486-0005
대전	대덕구	기초	대덕구정신건강복지센터	대덕구 석봉로 38번길 55 (석봉동), 대덕구보건소 별관 2층	042-931-1671
대전	동구	기초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구 현암로 22	042-673-4619
대전	서구	기초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서구 만년로 74	042-488-9741
대전	유성구	기초	유성구정신건강복지센터	유성구 박산로 177, 유성구보건소 2층	042-825-3527
대전	중구	기초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 수도산로 15	042-257-9930
울산		광역	울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남구 화합로 105 2층	052-716-7199
울산	남구	기초	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남구 삼산중로 132, 남구보건소치매안심센터 3층	052-227-1116
울산	동구	기초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구 봉수로 155	052-233-1040
울산	북구	기초	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북구 산업로 1018, 2층	052-288-0043
울산	울주군	기초	울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울주군 삼남면 서향교1길 67-12, 2층	052-262-1148
울산	중구	기초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중구 외솔큰길 225, 중구보건소 3층	052-292-2900
세종	세종시	기초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조치원읍 수원지1길 16, 2층 (남부)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3층, 312호	044-861-8521 (남부)044-863-9414
경기		광역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길 69 경기도의료원 2층	031-212-0435
경기	가평군	기초	가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155-15	031-581-8881
경기	고양시	기초	고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3-6, 현대빌딩 2층	031-968-2333
경기	고양시	기초	고양시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 고양지사 2층	031-908-3567
경기	과천시	기초	과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과천시 관문로 69, 과천시보건소 1층	02-504-4440
경기	광명시	기초	광명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광명시 오리로 613(하안동), 광명시보건소 3층	02-897-7787
경기	광주시	기초	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광주시 파발로 194	031-762-8728
경기	구리시	기초	구리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구리시 건원대로 34번길 84	031-523-8672

시도	시군구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경기	군포시	기초	군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군포시 군포로 221	031-461-1771
경기	김포시	기초	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포시 사우중로 108, 김포시보건소 별관 2층	031-998-4005
경기	남양주시	기초	남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남양주시 경춘로 522번지, 남양주시 제 2청사	031-592-5892
경기	동두천시	기초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두천시 거북마루로 49, 2층	031-863-3632
경기	부천시	기초	부천시야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부천시 경인오토 73, 소사어울마당 4층	032-654-4024
경기	부천시	기초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부천시 성오로 172, 오정어울마당 3층	032-654-4024
경기	성남시	기초	성남시소아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4층	031-751-2445
경기	성남시	기초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18, 수정구보건소 5층	031-754-3220
경기	수원시	기초	수원시노인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396	031-273-7511
경기	수원시	기초	수원시행복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 101(조원동), 장안구청 1층	031-253-5737
경기	수원시	기초	수원시성인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89, 2층	031-247-0888
경기	수원시	기초	수원시아동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	수원시 팔달구 동말로 47번길 17	031-242-5737
경기	시흥시	기초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	시흥시 호현로 55, 시흥시보건소 5층	031-316-6661
경기	안산시	기초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031-411-7573
경기	안성시	기초	안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성시 강변로 74번길 18	031-678-5361
경기	안양시	기초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양시 만안구 문예로 48	031-469-2989
경기	양주시	기초	양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양주시 삼송로 38번길 5, 2층	031-840-7320
경기	양평군	기초	양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양평군 양평읍 중앙로 111번길 34-21, 3층	031-771-3521
경기	여주시	기초	여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여주시 여흥로 160번길 14	031-886-3435
경기	연천군	기초	연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연천군 은대성로 95	031-832-8106
경기	오산시	기초	오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오산시 경기동로 59	031-374-8680
경기	용인시	기초	용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용인시 기흥구 신갈로 84번길 10, 신갈동행정복지센터 3층	031-286-0949
경기	의왕시	기초	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의왕시 오봉로 34	031-458-0682
경기	의정부시	기초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의정부시 범골로 158, 건윤빌딩 2층	031-838-4181
경기	이천시	기초	이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이천시 증일동 이섭대천로 1119, 상공회익소 2층	031-637-2330
경기	파주시	기초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시 조리읍 봉천로 68	031-942-2117
경기	평택시	기초	평택시정신건강복지센터	평택시 평택5로 56, 평택시보건소 A동 2층	031-658-9818
경기	포천시	기초	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포천시 포천로 1612	031-532-1655
경기	하남시	기초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200, 2층	031-793-6552
경기	화성시	기초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화성시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기타운 실내체육관 1층	031-352-0175
강원	광역	광역	강원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춘천시 춘천로 306-5	033-251-1970
강원	강릉시	기초	강릉시정신강증진센터	강릉시 남구길 23번길 24	033-651-9668
강원	고성군	기초	고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30, 고성군보건소	033-680-3951

시도	시군구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강원	동해시	기초	동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동해시 청운로 96, 1층	033-533-0197
강원	삼척시	기초	삼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삼척시 척주로 76, 2층	033-574-0190
강원	속초시	기초	속초시정신건강복지센터	속초시 중앙로 17번길 6	033-633-4088
강원	양구군	기초	양구군정신건강복지센터	양구읍 관공서로 42, 보건소 3층	033-482-9339
강원	양양군	기초	양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9-5, 보건소 2층	033-673-0199
강원	영월군	기초	영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영월읍 영월읍 하송로 46-43	033-370-2556
강원	원주시	기초	원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원주시 원일로 139, 건강문화센터 4층	033-746-0198.9
강원	인제군	기초	인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인제군 인제로 140번길 34, 인제군보건소	033-460-2522
강원	정선군	기초	정선군정신건강복지센터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3	033-562-4000
강원	철원군	기초	철원군정신건강복지센터	철원군 갈말읍 군탄로 16	033-450-5104
강원	춘천시	기초	춘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춘천시 효제길 35	033-244-7574
강원	태백시	기초	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	태백시 태백로 905(황지동, 보건소)	033-554-1378
강원	평창군	기초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평창군 평창읍 노성로 11	033-330-4800
강원	홍천군	기초	홍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홍천군 신장대로 5, 건강증진센터 2층	033-435-7482
강원	화천군	기초	화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화천군 강변로 111	033-440-2863
강원	횡성군	기초	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9	033-345-9901
충북		광역	충청북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청주시 1순환로 771 보덕빌딩 2층	043-217-0597
충북	괴산군	기초	괴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괴산군 괴산읍 동진천길 43	043-832-0330
충북	단양군	기초	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단양군 삼봉록 53	043-420-3257
충북	보은군	기초	보은군정신건강복지센터	보은군 보은읍 동광길 45	043-544-6991
충북	영동군	기초	영동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영동군 영동읍 반곡동길 7	043-740-5929
충북	옥천군	기초	옥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옥천군 옥천읍 삼양로 8길 10	043-731-2199
충북	음성군	기초	음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음성읍 중앙로 49, 3층	043-872-1883
충북	제천시	기초	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천시 의림대로 242	043-646-3074
충북	증평군	기초	증평정신건강복지센터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보건복지로 64-1	043-835-4276
충북	진천군	기초	진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진천군 진천읍 중앙북1길 11-8	043-539-7392
충북	청주시 (상당)	기초	청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청주시 상당구 단재로 480, 상당구보건소 1층	043-298-0199
충북	청주시 (서원)	기초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 235, 4층	043-291-0199
충북	청주시 (청원)	기초	청주시청원정신건강복지센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과학산업3로 238, 청원구보건소 1층	043-215-6868
충북	청주시 (흥덕)	기초	청주시흥덕정신건강복지센터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5번길 16	043-234-8686

시도	시군구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충북	충주시	기초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충주시 사직산21길 34, 충주시보건소 4층	043-855-4006
충남		광역	충청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별관 301호	041-633-9183
충남	계룡시	기초	계룡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계룡시 장안로 54	042-840-3567
충남	공주시	기초	공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공주시 금성길 7	041-852-1094
충남	금산군	기초	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559, 다락원 스포츠센터 내 1층	041-751-4721
충남	논산시	기초	논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논산시 논산대로 382(관촉동)	041-746-8073
충남	당진시	기초	당진시정신건강복지센터	당진시 서부로 56	041-360-6077
충남	보령시	기초	보령시정신건강복지센터	보령시 남포면 보령남로 234	041-930-5992
충남	부여군	기초	부여군정신건강복지센터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 205	041-830-8600
충남	서산시	기초	서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산시 호수공원6로 6	041-661-6583
충남	서천군	기초	서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서천군 서천읍 사곡길 26	041-950-6737
충남	아산시	기초	아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아산시 번영로 224번길 20	041-537-3451
충남	예산군	기초	예산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041-339-8993
충남	천안시 (동남)	기초	천안시동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천안시 동남구 벼들로 40	041-521-5011
충남	천안시 (서북)	기초	천안시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8길 29	041-578-9709
충남	청양군	기초	청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7길 54	041-940-4500
충남	태안군	기초	태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태안군 태안읍 서해로 1952-16	041-671-5300
충남	홍성군	기초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106	041-632-2588
전북		광역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5 나눔동지타운 407호	063-251-0650
전북	고창군	기초	고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고창군 전봉준로 90	063-563-8751
전북	군산시	기초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군산시 대야면 백마길 16	063-451-0363
전북	김제시	기초	김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제시 성산길 138	063-542-1350
전북	남원시	기초	남원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남원시 동문로 42-1, 2층	063-625-4122
전북	무주군	기초	무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413	063-320-8237
전북	부안군	기초	부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부안군 부안읍 오리정로 124	063-581-5830
전북	순창군	기초	순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순창군 순창읍 순창로 127	063-653-7304
전북	완주군	기초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완주군 삼례읍 삼봉8로 10-10, 완주군보건소 2층	063-262-3066
전북	익산시	기초	익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익산시 무왕로 975번지 익산시보건소	063-841-4235
전북	임실군	기초	임실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임실군 임실읍 호국로 1680	063-640-3124
전북	장수군	기초	장수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55-10	063-350-2800
전북	전주시	기초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덕진진료실 2층	063-273-6996

시도	시군구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전북	정읍시	기초	정읍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읍시 수성택지4길 11	063-535-2101
전북	진안군	기초	진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진안군 진안읍 진무로 1189	063-430-8528
전남		광역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나주시 세남로 1328-31	061-350-1700
전남	강진군	기초	강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강진군 강진읍 목리길 11	061-430-3550
전남	고흥군	기초	고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고흥군 고흥읍 등암3길 5	061-830-6673
전남	곡성군	기초	곡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4, 별관 2층	061-363-9917
전남	광양시	기초	광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1100	061-797-4005
전남	구례군	기초	구례군정신건강복지센터	구례군 구례읍 동편제길 30	061-780-2048
전남	나주시	기초	나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나주시 풍물시장 2길 57-32 나주시 보건소 별관 2층	062-333-6200
전남	담양군	기초	담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담양군 담양읍 완동길 1011	061-383-4000
전남	목포시	기초	목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목포시 석현로 48	061-276-0199
전남	무안군	기초	무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061-450-5102
전남	보성군	기초	보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보성군 송재로 153	061-853-5500
전남	순천시	기초	순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순천시 중앙로 232	061-749-6695
전남	신안군	기초	신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신안군 압해면 천사로 1004, 신안군보건소	061-240-8847
전남	여수시	기초	여수시정신건강복지센터	여수시 시청서 4길 47(학동)	061-659-4289
전남	영광군	기초	영광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4길 17	061-350-5666
전남	영암군	기초	영암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영암군 영암읍 오리정길 39	061-470-6028
전남	완도군	기초	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완도군 완도읍 농공단지길 34	061-550-6745
전남	장성군	기초	장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장성군 장성읍 청운11길 13	061-395-0199
전남	장흥군	기초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	장흥군 장흥읍 동교1길 13	061-864-0199
전남	진도군	기초	진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진도군 진도읍 남동1길 40-9	061-540-6932
전남	함평군	기초	함평군정신건강복지센터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54-8	061-320-2509
전남	해남군	기초	해남군정신건강복지센터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6	061-531-3765
전남	화순군	기초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40, 2층	061-374-4600
경북		광역	경상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	경주시 동대로 87 복지동 3층(석장동)	054-748-6400
경북	경산시	기초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산시 남매로 158	053-816-7190
경북	경주시	기초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경주시 양정로 300	054-777-1577
경북	고령군	기초	고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고령군 대가야읍 왕릉로 56-5, 3층	054-950-7981
경북	구미시	기초	구미시정신건강복지센터	구미시 선산대로 111	054-444-0199
경북	구미시 (선산)	기초	구미시선산정신건강복지센터	구미시 선산읍 선주로 121	054-483-4376

시도	시군구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경북	군위군	기초	군위군정신건강복지센터	군위군 군위읍 군청로 70	054-380-7411
경북	김천시	기초	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천시 체육공원길 21, 3층	054-433-4005
경북	문경시	기초	문경시정신건강복지센터	문경시 점촌1길 13, 통합건강증진센터 2층	054-554-0802
경북	봉화군	기초	봉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봉화군 봉화읍 거촌로 12-3	054-674-1126
경북	상주시	기초	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상주시 경상대로 3023	054-536-0668
경북	성주군	기초	성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	성주군 성주읍 성박숲길 12	054-930-8264
경북	안동시	기초	안동시정신건강복지센터	안동시 관광단지로 40, 응도빌딩 2층	054-842-9933
경북	영덕군	기초	영덕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53	054-730-7162
경북	영양군	기초	영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영양군 영양읍 동서대로 82	054-680-5871
경북	영주시	기초	영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영주시 영주로 159번길 73, 2층	054-639-5721
경북	영천시	기초	영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영천시 조양공원길 21	054-331-6770
경북	예천군	기초	예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예천군 군청길 33	054-650-8035
경북	울릉군	기초	울릉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	054-790-6822
경북	울진군	기초	울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61-8	054-789-5037
경북	의성군	기초	의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228	054-830-6774
경북	청도군	기초	청도군정신건강복지센터	청도군 화양읍 산성강변길 472	054-373-8006
경북	청송군	기초	청송군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송군 의료원길 19	054-870-7360
경북	칠곡군	기초	칠곡군정신건강복지센터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1길 30	054-973-2023
경북	포항시 (남구)	기초	포항시남구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항시 남구 동해안로 6119번길	054-270-4073
경북	포항시 (북구)	기초	포항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항시 북구 삼흥로 98	054-270-4191
경남		광역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457번길 47 (경남사회복지센터)	055-239-1400
경남	거제시	기초	거제시정신건강복지센터	거제시 수양로 506	055-639-6200
경남	거창군	기초	거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	거창군 거함대로 3079	055-940-8388
경남	고성군	기초	고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고성군 고성읍 남포로 79번길 103-3	055-670-4023
경남	김해시	기초	김해시정신건강복지센터	김해시 주촌면 주선로 29-1	055-329-6323
경남	남해군	기초	남해군정신건강복지센터	남해군 남해읍 선소로 6	055-860-8694
경남	밀양시	기초	밀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밀양시 삼문중앙로 41	055-359-7095
경남	사천시	기초	사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1, 사천시보건소	055-831-3746
경남	산청군	기초	산청군정신건강복지센터	산청군 산청읍 중앙로 97	055-970-7572
경남	양산시	기초	양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	양산시 중앙로 7-32, 양산시보건복지센터 4층	055-367-2255
경남	의령군	기초	의령군정신건강복지센터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8길 16	055-570-4093

시도	시군구	구분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경남	진주시	기초	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진주시 월아산로 983, 2층	055-749-5774
경남	창녕군	기초	창녕군정신건강복지센터	창녕군 창녕읍 우포2로 1189-35	055-530-6283
경남	창원시 (마산)	기초	마산정신건강복지센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북로 15	055-225-6031
경남	창원시 (의창)	기초	창원정신건강복지센터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162번길 9, 창원시보건소 4층	055-287-1223
경남	창원시 (진해)	기초	진해정신건강복지센터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2, 3층	055-225-6391
경남	통영시	기초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통영시 안개4길 108, 통영시보건소 3층	055-650-6544
경남	하동군	기초	하동군정신건강복지센터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31	055-880-6670
경남	함안군	기초	함안군정신건강복지센터	함안군 가야읍 중앙남4길 10	055-580-3201
경남	함양군	기초	함양군정신건강복지센터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41	055-960-8060
경남	합천군	기초	합천군정신건강복지센터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055-930-4835
제주		광역	제주특별자치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아란13길 15 제주대학교병원 내 별관	064-717-3000
제주	서귀포시	기초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귀포시 중앙로 101번길 52 (서홍동)	064-760-6553
제주	제주시	기초	서귀포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 연삼로 264	064-728-4074

15 해바라기센터 현황

시도	명칭	운영기관	개소일	유형	소재지	연락처
서울	서울동부해바라기센터	경찰병원	'05.8.31.	위기지원	서울 송파구	02-3400-1700
	서울남부해바라기센터	보라매병원	'08.12.3.	위기지원	서울 동작구	02-870-1700
	서울해바라기센터	서울대병원	'11.2.16.	통합	서울 종로	02-3672-0365
	서울해바라기센터(아동)	연세의료원	'04.6.18.	아동	서울 마포	02-3274-1375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서울의료원	'22.3월 예정	위기지원	서울 중랑구	-
부산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	부산의료원	'13.9.6.	위기지원	부산 연제구	051-501-9117
	부산해바라기센터	부산대병원	'16.1.25.	통합	부산	051-244-1375
대구	대구해바라기센터	대구의료원	'06.5.9.	위기지원	대구 서구	053-556-8117
	대구해바라기센터(아동)	경북대병원	'05.6.9.	아동	대구 중구	053-421-1375
인천	인천동부해바라기센터	인천의료원	'06.3.31.	위기지원	인천 동구	032-582-1170
	인천북부해바라기센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13.5.9.	위기지원	인천 부평구	032-280-5678
	인천해바라기센터(아동)	가천대길병원	'09.7.17.	아동	인천 남동	032-423-1375
광주	광주해바라기센터	조선대병원	'06.9.4.	위기지원	광주 동구	062-225-3117
	광주해바라기센터(아동)	전남대병원	'05.6.29.	아동	광주 동구	062-232-1375
대전	대전해바라기센터	충남대병원	'14.12.1.	통합	대전 중구	042-280-8436
울산	울산해바라기센터	울산병원	'11.12.1.	통합	울산 남구	052-265-1375
경기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	의정부의료원	'07.9.18.	위기지원	경기 의정부	031-874-3117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	단원병원	'20.11.5.	위기지원	경기 안산	031-364-8117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아주대병원	'14.11.19.	통합	경기 수원	031-215-1117
	경기북서부해바라기센터	명지병원	'14.12.26.	통합	경기 고양	031-816-1375
	경기해바라기센터(아동)	분당차병원	'08.12.26.	아동	경기 성남	031-708-1375
	경기중부해바라기센터	순천향대 부속 부천병원	'21.1.22.	통합	경기 부천	032-651-1375
강원	강원서부해바라기센터	강원대병원	'12.12.12.	통합	강원 춘천	033-252-1375
	강원동부해바라기센터	강릉동인병원	'10.9.8.	통합	강원 강릉	033-652-9840
	강원남부해바라기센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18.12.31.	통합	강원 원주	033-735-1375
충북	충북해바라기센터	청주의료원	'06.2.8.	위기지원	청주 서원구	043-272-7117 043-274-7117
	충북해바라기센터(아동)	건국대충주병원	'09.7.22.	아동	충북 충주	043-857-1375
충남	충남해바라기센터	단국대병원	'10.1.13.	통합	충남 천안	041-567-7117

시도	명칭	운영기관	개소일	유형	소재지	연락처
전북	전북해바라기센터	전북대병원	'06.2.1.	위기지원	전주 덕진구	063-278-0117
	전북해바라기센터(아동)	전북대병원	'09.7.6.	아동	전북 전주	063-246-1375
	전북서부해바라기센터	원광대병원	'17.12.20.	통합형	전북 익산	063-859-1375
전남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	성가롤로병원	'10.1.28.	위기지원	전남 순천	061-727-0117
	전남해바라기센터	영광기독병원	'19.11.1	통합	전남 영광	061-351-4375
경북	경북북부해바라기센터	안동의료원	'06.1.12.	위기지원	경북 안동	054-843-1117
	경북동부해바라기센터	포항성모병원	'16.1.1.	통합	경북 포항	054-278-1375
	경북서부해바라기센터	김천제일병원	'15.12.1.	위기지원	경북 김천	054-439-9600
경남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경상대병원	'09.8.7.	통합	경남 진주	055-754-1375
	경남해바라기센터	마산의료원	'06.12.1.	위기지원	경남 마산	055-245-8117
제주	제주해바라기센터	한라병원	'15.1.28.	통합	제주 제주시	064-749-5117

16 성폭력상담소 현황

시도	상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울 (21)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3, 오성빌딩 301호	02-883-9284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101동 410호	02-3013-1367
	휴샘통합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7나길 26, 경우빌딩 402호	02-2664-1366
	행복드림가정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69 제성빌딩 3층	070-8864-9365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57 려산빌딩 지하1층	02-2658-1366
	이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20-1 성준빌딩 5층	02-3281-1366
	가족과성건강아동청소년상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86. 808호 (오류동, 동선오피스텔)	070-8128-1366, 02-2688-1366
	벨엘성가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02, 301호 (시흥동, 동하빌딩)	02-896-0401
	꿈과희망상담센터	서울특별시 동작구 대림로 6 (신대방동)	070-7503-1366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15마길 8-13	02-825-1272
	(사)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촌로14길 20, 태안빌딩 4층	02-7337-119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02-338-2890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26길 39 (성산동)	02-739-8858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 10-10. 4층	02-599-7606
	한국여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2길 28, 신일빌딩 4층	02-953-1704
	북한이탈여성 성폭력피해상담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339 목동트윈빌 지층131호	02-2651-1366
	꿈터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3길 14	02-6083-4971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02호	02-3675-4465-6
	(사)한국여성의전화 부설여성인권상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 (녹번동)	02-3156-5400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 B2	02-338-8043
	꿈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44 덕화빌딩 6층 602호	02-902-3356
부산 (6)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25(남천동)	051-624-5521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607, 4층	051-817-4344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하브스카이 A3동 05,06호	051-558-8833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2 (광안동)	051-753-1377
	(사)가정열린상담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290	051-531-1366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 부산장애인종합회관 4층	051-583-7735

시도	상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구 (4)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제보상로 46길 16(평리동) 3층	053-566-1900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봉덕동)	053-471-6483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 54(범어동)	053-745-4501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광역시 월배로 410(송현동)	053-637-6057
인천 (5)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42(간석동)	032-451-4093~4
	(사)인천광역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 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간석동)	032-424-1366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37-10 스카이빌라트 107동 101호	032-506-5479
	(사)인천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 성폭력통합상담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345	032-865-1365
	서인천가족상담소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247(3층)	032-564-1366
광주 (7)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삼호센터별관 102호	062-521-1360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16 (4층)	062-673-1366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82번길8	062-654-1366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404번길15	062-363-0487
	지구촌가족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87(3층)	062-672-8282
	어등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원로140	062-946-8004
	참사랑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86번길7-17	062-954-4236
대전 (5)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 9 월평빌딩3층	042-223-8866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길 15-4	042-637-1366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	042-254-3038
	위드유성 성인권 상담센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8, 614호(홍인타워)	042-361-1004
	대전여민회부설 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2번길 9-3(용두동)	042-257-3534
울산 (4)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27(3층)	052-245-1366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 402호	052-246-1368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호	052-267-1366
	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광역시 동구 내진길 18 (2층)	052-252-6778
세종 (2)	세종YWCA성인권상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044-862-9191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 3층	044-850-3091

시도	상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경기 (32)	군포여성민우회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0-33, 802호	031-396-0236
	부천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담프라자 302호	032-328-9713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성주로149	032-655-1366
	경원사회복지회 부설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92 태평동라커뮤니티 3층 303호	031-755-2526
	용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8번길 11	031-281-1366
	사원선복지회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105번길 29	031-658-6614
	하남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205번길 27 서해상가4층	031-796-1274
	안산YWCA여성과성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광덕서로 66, 412호	031-413-9414
	(사)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129번길 13 순흥빌딩	031-797-7031
	의왕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경기도 의왕시 부곡중앙남1길 34	031-344-4401
	연천행복뜰상담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131	031-832-1315
	성폭력상담소함께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415	031-946-2096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5, 2층(상패동)	031-867-3100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426(금오동4층)	031-840-9203
	포천가족상담센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571(정우빌딩3층)	031-542-3171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46, 301호(금곡동, 양지빌딩)	031-558-1366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9, 5층(안양동, 사인빌딩 5층)	031-442-5385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 녹산빌딩 7층	031-232-7795
	이천가정상담소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213 서영빌딩F층	031-638-7200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주민신행복빌딩 3층	031-751-2050
	공감심리상담소	경기도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575 3 층	031-514-5150
	안성성교육성폭력상담센터	경기도 안성시 서당길 39 (금산동)	031-676-1366
	양주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양주시 독바위로5 남양상가 306호	031-864-7546
	고양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32-21, 503동 10호(정형동 로데오메탈릭타워)	031-907-1068
	한마음가족상담센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현로 9, 501호 (대경T&S빌딩)	031-979-1367
	경기북부가정,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곡로 596번길 19, 골드타워402	031-876-7545
	맘톡상담센터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오례3길 11, 1층	031-298-2117
	수원청소년성인권센터 부설 상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62 창경빌딩 501호	031-251-1516~ 7
	김포여성상담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곡1로 56번길 3(4층)	031-984-1367
	젠더기반폭력상담소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5, 204호	031-997-1399
	새남심리상담연구원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275번길 65-1(관악동)	031-381-8540

시도	상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한국장애인폭력상담소	경기도 남양주시 강변북로632번길 27-5	031-555-1366
강원 (10)	영월성폭력상담소 마음쉼터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	033-375-1366
	정선아라리가족성상담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담길 73	033-563-8666
	속초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307 (2층)	033-637-1988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188 2층	033-535-4943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5 3층	033-257-4687
	원주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원주시사회복지센터 307호, 학생동)	033-765-1366
	원주성폭력·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세이	강원도 원주시 동부순환로2, 201호(단구동)	033-762-1366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454, 2층	033-652-9556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강원도 삼척시 원당로2길 72-6	033-575-1366
	행복만들기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서로3번길 15	033-344-1366
충북 (8)	청주여성익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15-2 3층	043-252-0966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	043-263-2000
	제천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5길 12(명동 190-3)	043-653-1331
	충주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충주시 시직산 21길 34(복합복지관 302호)	043-845-1366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15-2 2층	043-224-9414
	영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회동로 212-1	043-743-1366
	청주ywca통합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 1순환로 536번길 4(봉명동)	043-268-3007~8
	단양한스심리상담센터	충청북도 단양군 단양 상봉로 274 황이정승빌딩2층	043-422-3004
충남 (18)	(사)충남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69(영성동) 2층	041-564-0026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5길 4 두정프라자301호	041-592-6500
	사)천안여성익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도원7길 18 2층	041-561-0306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1길 44-11 4층	041-852-1950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115번길 20-14, LK빌딩2층	041-541-1514
	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충청남도 태안읍 후곡로 62, 202호	041-675-9536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132-32, 2층	041-631-3939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충청남도 보령시 대천로 35	041-936-7941
	아산가정성상담지원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순천향로1060	041-546-9191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67 운암빌딩 1층, 2층	041-354-2366
	금산성가족통합상담소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비호산로 57번길 삼호상가 1층, 2층	041-450-7366
	계룡시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변영로26(굿타임빌딩) 3층	042-551-7795
	금산성폭력상담센터	충청남도 금산군 금산읍 금산로 1444 2층	041-752-9911
	부여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2	041-837-1366

시도	상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서천군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23 (2층)	041-956-1377
	예산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55번길 10, 101호	041-335-1311
	당진시 폭력예방 상담소	충청남도 당진시 시장동길 74	041-353-8577
	아산늘품상담지원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 69번길 10-3	041-541-0119
전북 (7)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2길 12-4	063-236-0152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군산시 구영7길 8	063-442-1570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정읍시 충정로 273	063-537-1366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53-1	063-546-8366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67	063-223-3015
	익산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2층)	063-834-1366
	남원YWCA통합상담소	전라북도 남원시 동림로 45, 5층(향교동)	063-625-1318
전남 (9)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항로 6(2층)	061-666-4001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104	061-753-1366
	나주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30, 진우타워 205호	061-332-1366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무정로 42, 2층	061-381-1366
	해남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30	061-533-9181
	무안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 32 센트럴프라자 B동 202호	061-281-1360
	함평보두마상담센터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외대화길 27 하나캐슬 203동101호	061-324-1388
	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257, 1층	061-283-4767
	목포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061-285-1366
경북 (11)	(사)한마음부설한마음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 40번길 8-3 3층	054-277-9540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54-11	054-777-1520
	경산로템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66	053-853-5276
	새경산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경산시 경안로 132-1	053-814-1318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중앙로 60-1	054-843-1366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12길 18-1, 1층	054-443-1366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길 41	054-463-1386, 1388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8	054-534-9996
	문경열린종합상담소	경상북도 문경시 남부3길19	054-555-8207
	(사)칠곡종합상담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69-35	054-973-8290~1
	(사)포항여성회부설 경북여성종합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로 10번길 6-2(송도동)	054-284-0404

시도	상담소명	소재지	전화번호
경남 (15)	창원여성의전화부설창원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42 토월복합상가 725호	055-283-8322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 504호	055-244-8400
	진해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총장로 511번길16	055-546-8322
	진주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477번길 11 2층	055-747-1366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97번길 19-1, 2층(평거동)	055-745-1366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1길 4(항남동)	055-648-2070
	김해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95 화성빌딩 202호	055-329-6451
	양산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61, 204호	055-366-6676
	창녕성건강가정 상담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 사회복지타운 B1	055-521-1366
	하동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	055-884-1360
	거창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70 2층	055-944-1828
	(사)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 804호	055-241-5041
	밀양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68 여성회관 내	055-391-1366
	함안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면 용산2길 70, 1층	055-587-1367
	제주 (4)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거제시 탐곡로75, 2층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1길 3	064-748-3040
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고마로 84	064-756-4008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3길 1-4 4층	064-753-4982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42번길 46, 5층	064-732-3279

- 본 자료는 ① 2022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② 2021년 아동학대 유관기관 공동업무수행지침
③ 2021년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
④ 2021년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⑤ 2021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
⑥ 2020년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

등을 참고로 하여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인권보호 매뉴얼

발행일 : 2022년 5월

발행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Tel. 044) 202-3437

Fax. 044) 202-3968

<http://www.mohw.go.kr>